

연구총서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 · 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 성 훈

통 일 연구 원

#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핵무기개발 포기라는 비핵화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실현하여 남북한의 핵비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외교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선언이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핵비확산 운동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방안으로서, 남북한과 일본이 참여하는 「3국비핵지대」(Korea-Japan Nuclear-Weapon-Free Zone: KJNWFZ)의 창설을 제의하였다. 3국비핵지대의 기본개념은 남북한이 1991년 비핵화를 선언함과 아울러 일본도 1967년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3원칙을 선언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건설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한 3국이 협력해서 기존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여 서로간에 핵비보유의지를 재확인하고 신뢰를 구축함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비핵정신의 저변을 넓혀나감으로써 지역의 안보와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3국비핵지대창설의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핵협상과정과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내용 그리고 5개 핵국과 남북한 및 일본의 비핵지대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3국비핵지대창설이 갖는 다양한 효과와 현실적 타당성을 제시한 바탕위에서,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3국비핵지대 창설문제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구체적인 창설방안까지 제시하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남북한의 핵협상현황을 남북고위급회담

이전부터 핵통제공동위원회협상이 결렬되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차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Ⅲ장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남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무기개발의혹, 선언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조약으로서의 구성요건 결여 등 세가지로 파악하였다. 기존의 비핵지대조약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고찰하였다. 비핵지대의 정의와 다섯차례의 NPT 평가회의에서 그리고 최근에 개진된 의견을 검토하였다. 또한 중남미비핵지대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동남아비핵지대조약,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등 네가지 주요 비핵지대조약을 분석하였고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제안과 일국비핵지대선언도 살펴보았다. 제Ⅴ장은 3국비핵지대창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비핵지대에 대한 5개핵국들의 입장을 검토하였고 남북한 및 일본이 3국비핵지대창설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3국비핵지대창설이 타당성이 있고 동북아의 안보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제Ⅵ장에서는 3국비핵지대의 창설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3국비핵지대조약의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고 핵국을 비롯한 주변의 관련국들이 참여해야 할 부속의정서도 제안하였다. 아울러 3국비핵지대조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행기구와 조직, 사찰제도, 분쟁해결절차 및 비핵지대 설립절차의 대강도 밝혀두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3국비핵지대창설에 호응하고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에 대한 Track II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재 진행중인 4차회담에서 정부차원의 공식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국비핵지대의 창설이 지역안보증진을 목표로 한 긴 여정의 종착역은 아니다. 3국비핵지대조약이 체결되어 성공적으로 이행

될 경우, 대상국과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 되어야 한다. 이미 일국비핵지대를 선언한 몽고를 참여시키고, 그 다음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단계를 밟아 엔디콧(John Endicott)이 구상하는 동북아제한비핵지대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방콕조약이 관할하는 동남아시아, 라오통가조약이 관장하는 남태평양지역 그리고 틀렛틀코조약의 중남미지역을 연결하는 「환태평양비핵지대」(Pan-Pacific Nuclear-Weapon-Free Zone: PPNWFZ)도 구상할 수 있다. 남북한과 일본이 참가하는 3국비핵지대는 바로 PPNWFZ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와 함께, 3국비핵지대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낮아졌을 때, 3국비핵지대는 역외 국가에 대한 모든 무력공격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3국평화지대」(Korea-Japan Peace Zone: KJPZ)로 발전적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다. 환태평양비핵지대를 「환태평양평화지대」(Pan-Pacific Peace Zone: PPPZ)로 전환하는 것은 그 다음 수순으로서 지역안보의 중추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	1
II.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한협상 현황 .....	5
1. 남북고위급회담 이전 .....	5
2. 남북고위급회담과 비핵화공동선언 합의 .....	8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과 핵사찰협상 개시 .....	13
4. 남북대화 중단과 핵사찰협상 실패 .....	20
III. 비핵화공동선언실천의 장애요인 .....	23
1. 남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의혹 .....	23
2. 선언의 내재적 문제점 .....	27
3. 조약의 구성요건 결여 .....	30
IV. 비핵지대에 대한 고찰 .....	32
1. 비핵지대의 정의와 논의 .....	32
가. 비핵지대의 정의 .....	32
나. NPT 평가회의에서의 논의 .....	38
2. 비핵지대조약의 사례 .....	46
가. 중남미비핵지대조약 .....	46
나.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	47
다. 동남아비핵지대조약 .....	49
라.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	51
마. 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 .....	53

바. 기타 .....	58
<b>V. 3국비핵지대창설시 고려사항 .....</b>	<b>63</b>
1. 관련국들의 입장 .....	63
가. 비핵지대에 대한 핵국들의 입장 .....	63
나. 남북한과 일본의 입장 .....	68
2. 3국비핵지대창설의 타당성의 효과 .....	75
가. 북한의 핵개발기도 차단 .....	75
나. 유명무실화된 비핵화공동선언의 발전적 개편 .....	77
다. 일본의 지위와 기술력 활용 .....	78
라.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혹 해소 .....	80
마. 3국의 원자력정책에 법적 구속력 부여 .....	82
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조치 .....	84
사. 국제적 핵비확산 노력에 기여 .....	84
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추세에 부응 .....	85
<b>VI.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 .....</b>	<b>87</b>
1. 조약의 주요 조항 .....	87
가. 규제대상 .....	87
나. 금지활동 .....	88
다. 적용지역 .....	91
라. 기존의 관련 국제규범 준수 .....	93
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	94
바. 핵무장 함선·항공기의 통과(항)·기착(항) .....	95
사. 기타 주요 사항 .....	97

2. 부속의정서 .....	97
가. 포괄적 안전보장의정서 .....	98
나. 해상·육상 핵폐기물투기금지의정서 .....	99
3. 이행기구와 조직 .....	100
4. 검증제도 .....	101
5. 특별사찰 .....	103
6. 조약위반제소시 해결절차 .....	104
7. 3국비핵지대 설립절차 .....	105
8. 북한참여 유도방안 .....	106
가. 국제조약을 통한 국가인정 .....	107
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혹 해소 .....	108
다. 주한·주일미군의 핵보유의혹 해소 .....	109
라. 비핵지대주장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 .....	109
<b>VII. 결론</b> .....	<b>113</b>
<b>참고문헌</b> .....	<b>117</b>

- 도 표 목 차 -

<도표 1> 세계각국의 핵개발 능력과 가능성 .....	25
<도표 2> 세계의 비핵지대 관련 조약들 .....	61, 62

## I. 서론

1998년 8월 북한이 금창리에서 “핵무기개발”(이하 핵개발)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문제가 다시 남북한과 동북아의 주요 안보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에는 1991년 12월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공동선언)과 1994년 북·미가 체결한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있다. 제네바기본합의문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이행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 대화의 부진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핵무기의 확산방지” 혹은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5년 「핵무기비확산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의 평가회의에서 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합의되었고 핵군축과 핵개발저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배가되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지역에서 비핵지대의 창설문제가 논의되거나 실제로 창설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력한 범세계적인 핵비확산추세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남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1993년 초 상호사찰협상이 결렬된 후 양측은 선언의 이행의사를 표명해 왔을 뿐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비핵화공동선언이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한반도비핵화의 실현여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한

## 2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국의 경우 선언이 국회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핵화공동선언이 두 정권간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남북한 모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핵화공동선언은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을 포기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스스로 제약을 가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이라는 국가발전의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 정책집행으로써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 국내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핵개발포기라는 비핵화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실현하여 남북한의 핵비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의 외교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선언이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인 핵비확산 운동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방안으로서, 남북한과 일본이 참여하는 「3국비핵지대」(Korea-Japan Nuclear-Weapon-Free Zone: KJNWFZ)의 창설을 제의하고자 한다. 3국비핵지대의 기본개념은 남북한이 1991년 비핵화를 선언함과 아울러 일본도 1967년 핵무기의 “제조, 보유,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3원칙을 선언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건설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한 3국이 협력해서 기존의 약속을 성실히 준수하여 서로간에 핵비보유의지를 재확인하고 신뢰를 구축함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비핵정신의 저변을 넓혀나감으로써 지역의 안보와 평화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 3국비핵지대창설의 주요 목적이다.

「비핵지대」(nuclear-weapon-free zone: NWFZ)는 NPT를 보완하면서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1999년 4월

현재 114개국이 다양한 비핵지대조약의 회원국이며 지구상 육지면적의 50% 이상이 비핵지대로 분류된다. 비핵지대를 선언한 조약은 조약당사국들이 해당지역내에서 핵무기의 개발, 제조, 저장, 획득, 보유 등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감시하에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기존의 비핵지대조약은 대부분 해당지역을 비핵지대 혹은 “비핵화지대”(denuclearized zone)로 칭한다. 다만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의 경우 적용지역의 영문명칭을 “nuclear-free zone”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을 비롯하여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용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비핵지대조약은 핵실험과 방사능물질의 해양투기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비핵지대조약은 1968년 체결되어 1970년 발효된 NPT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자리매김되어왔다. NPT조약의 제Ⅶ조는 비핵국들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영토를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비핵지대로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핵지대의 중요성은 이후 5년마다 개최된 NPT 평가회의에서 빠짐없이 논의되었으며, 1995년 NPT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회의에서 다시 강조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남북한의 핵협상현황을 남북고위급회담 이전부터 핵통제공동위원회협상이 결렬되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차이가 여러 곳에서 드러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남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무기개발의혹”(이하 핵개발의혹 혹은 핵의혹), 선언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조약으로서의 구성

#### 4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요건 결여 등 세가지로 파악할 것이다. 기존의 비핵지대조약에 대해서는 제IV장에서 고찰하겠다. 비핵지대의 정의와 다섯차례의 NPT 평가회의에서 그리고 최근에 개진된 의견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중남미비핵지대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동남아비핵지대조약,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등 네가지 주요 비핵지대조약을 분석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제안과 일국비핵지대선언도 살펴볼 것이다. 제V장에서는 3국비핵지대창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비핵지대에 대한 5개 핵국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남북한 및 일본이 3국비핵지대창설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3국비핵지대창설이 타당성이 있고 동북아의 안보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겠다. 제VI장에서는 3국비핵지대의 창설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3국비핵지대조약의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하고 핵국을 비롯한 주변의 관련국들이 참여해야 할 부속의정서도 제안할 것이다. 아울러 3국비핵지대조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행기구와 조직, 사찰제도, 분쟁해결절차 및 비핵지대 설립절차의 대강도 밝혀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3국비핵지대창설에 호응하고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 II.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한협상 현황

### 1. 남북고위급회담 이전

북한은 분단 이후 주한미군의 “핵무기보유”(핵보유)를 비난하면서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반대입장을 보여주는 최초의 공식기록은 195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가 남한 국회와 국민에게 보낸 서한이다.<sup>1)</sup> 이 서한에서 북한은 한국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간헐적으로 핵문제를 제기했던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반핵무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1980년 12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구체적 실천조치를 제시하면서 한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의하였다.<sup>2)</sup> 북한은 1986년 6월 23일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미국 3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sup>3)</sup> 1987년 7월 23일에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남북한군사력을 100,000명으로 감축하고 미군과 핵무기를 함께 철수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남북한·미국의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였다.<sup>4)</sup> 한편 1988년 11월 7일 발표된 군축안에서 북한은 1989년 말까지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북위 35도 30분 이남으로 철수하고 1990년 말까지는 한반도에

1) 「로동신문」, 1956년 11월 8일.

2)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3) 「조선중앙연감 198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599.

4) 「조선중앙연감 1988」(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p. 243.

서 완전히 철수시킬 것을 제의하였다.<sup>5)</sup> 이 제안에서도 북한은 검증 문제를 비롯하여 제반문제를 다룰 3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핵철수)를 겨냥한 북한의 제안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1990년 5월 31일 발표된 군축안에서 북한은 10개항의 신뢰구축 및 군축 방안을 제시하였다.<sup>6)</sup> 이 제안에서 북한은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①남한내 모든 핵무기의 즉각 철수를 위해 공동 노력함, ②핵무기의 생산·구입을 금지함, ③핵무기를 적재한 외국비행기와 함선의 한반도내 출입·통과를 금지함. 한편, 1991년 7월 30일 북한은 외교부성명을 통해서 남북한이 1992년말까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선언하고 1993년말까지 주변 핵보유국들로부터 비핵지대의 지위를 보장받을 것을 제의하였다.<sup>7)</sup> 이 제안은 3자회담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주한미군철수를 비핵지대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사후조치로 암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제안들과 차이가 있었다.

이 기간중 한국은 북한의 핵관련 제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1970년대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하였다.<sup>8)</sup> 1991년 8월 1일 한국외무부가 남북한이 긴

5) 「조선중앙연감 198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pp. 150~154.

6) 「로동신문」, 1990년 6월 2일.

7) 「로동신문」, 1991년 7월 30일.

8) 1975년 6월 12일 박정희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을 철거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6일 워싱턴 포스트지와 의 기자회견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서울: 일신사, 1988), p. 457. 1977년 5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가 철거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고, 같은 해 6월 29일 박동진 외무장관은 국회에서 국가생존을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핵비확산문제를 포함한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핵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제의는 전무하였다.<sup>9)</sup> 핵문제에 관한 한국의 미온적 태도는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에 대한 논의자체가 한국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책은 미국의 핵우산보호가 필요하다는 기본인식하에 한반도에 핵무기의 존재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 미국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8월 발발한 걸프전쟁은 미온적이던 한국의 핵비확산정책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에 대해 유엔의 제재결의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아온 이라크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의혹을 증폭시켰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당면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하게 되었다.<sup>10)</sup>

1991년 4월 12일 이종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응징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영변지역에 대한 군사공격가능성을 최초로 암시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서울: 나남, 1991), p. 171.

- 9) 한국정부의 제의는 아니었지만 이 기간중 한국에서 제시된 유일한 비핵지대제안은 1976년 1월 16일 당시 통일당의 당수였던 양일동씨의 제안이었다. 그는 한반도비핵지대제 제의하면서 주변 4강의 협조와 북한의 NPT 가입을 촉구하였다. 「남북한 통일·대화제의 비교 (I)」(서울: 국토통일원, 1990).
- 10)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안이 수행되기 전에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의식하여 취한 조치로는 1990년 11월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및 화학전능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 1991년 1월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것, 그리고 같은 해 2월 북한이 IAEA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줄 것을 IAEA에 요청한 것 등이었다.

하였다.<sup>11)</sup> 1991년 7월 2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을 촉구하고 미북관계도 북한의 핵사찰수용 및 남북관계진전 등과 연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한국외무부가 1991년 8월 1일 북한의 7월 30일자 비핵지대제안의 일부 긍정적 요소를 인정하면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핵비확산문제를 포함한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sup>12)</sup> 한반도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태우대통령은 1991년 9월 24일 제46차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무력의 감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NPT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sup>13)</sup>

## 2. 남북고위급회담과 비핵화공동선언 합의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논의는 1991년 10월 22~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7개항을 요구하였다:<sup>14)</sup> ①핵무기의 실험·생산·반입·

11) 「한국일보」, 1991년 4월 14일. 이장관의 발언은 국내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곧 철회되었다. Seongwhun Cheon, "A South Korean view of US 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 paper prepared for The Woodrow Wilson Center's International Project on *US Counterproliferation Doctrine*, held in Washington, D.C., October 24, 1994, pp. 11~12.

12) 「조선일보」, 1991년 8월 2일.

13) 「한국일보」, 1991년 9월 25일.

14) 연형묵총리 기초연설문, 「남북대화: 제53호」(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1), pp. 78~79.

보유·사용 금지, ②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함선의 한반도 출입·통과·방문 금지, ③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배치 금지, ④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⑤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⑥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내 군사기지사찰의 동시실시, ⑦핵국들에 대한 핵위협금지 및 비핵지대지 위존중 요구.

반면에, 한국은 북한이 조건없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보호는 필요하며 미국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일부 제안은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한편, 1991년 9월 27일 부시대통령의 전술핵 감축선언과 10월 5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국제적인 핵감축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 해 11월 8일 노태우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sup>15)</sup> 한국정부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공식적인 핵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선언
- 핵무기의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5원칙 선포
-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 금지
-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

---

15) 「조선일보」, 1991년 11월 9일.

노태우대통령은 최근 회고에서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sup>16)</sup> 노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제적 의무사항도 아닌 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의 보유포기를 북한보다 먼저 선언하고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이었고 교육지책이었다는 사실을<sup>17)</sup>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에 북한이 재처리시설로 보이는 대규모시설물을 건설중이면서 IAEA 사찰을 거부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재처리·농축시설 포기라는 카드를 대통령의 선언형태로 먼저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북한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다.

한편, 한국국방부장관은 1991년 11월 15일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서는 IAEA나 유엔 등을 통한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한 저공정찰 등 준군사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가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sup>18)</sup>

1991년 12월 10~13일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제4차 고위급회담시 제의했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수정없이 제

16) “盧泰愚 前대통령의 肉聲회고록,” 「月刊朝鮮」, 1999년 5월호, p. 132.

17) Seongwhun Cheon, “The inter-Korean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its past, present and future,”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and lecture on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Japan* sponsored by the Asahi Shimbun, the city of Hiroshima, and the Hiroshima Peace Culture Foundation, held at the Hiroshim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July 29, 1997, p. 3.

18) 「조선일보」, 1991년 11월 16일.

시한 반면, 한국은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보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하였다.<sup>19)</sup>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신뢰구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쌍방의 핵관련 시설과 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남북한 상호사찰을 제의하였다. 또한 시범조치로서 남북한이 재처리시설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우선적으로 1992년 1월 31일까지 상대방이 지정하는 원자력시설과 군사기지 한 곳씩에 대한 시범사찰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한국측 사찰대상으로 군산비행장과 북한이 지정하는 원자력시설 한 곳을, 북한측 사찰대상으로 영변핵단지과 순천비행장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예기치 못한 한국의 사찰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함으로써 남북한은 핵관련 대표접촉을 다시 갖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대통령은 “이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반도내 핵무재 선언」을 발표하였다.<sup>20)</sup> 그는 이 선언을 통해 11월 8일 발표된 비핵화 선언이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천명하고 이제 핵개발이나 사찰거부의 명분과 이유가 사라진 만큼 북한이 조속히 IAEA 사찰을 수락하고 재처리·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sup>21)</sup> 노대통령의 핵부

19) “비핵지대”의 영문표기는 “Nuclear-Weapon-Free Zone”이고, “비핵화”는 “Denuclearization”이다. 국제적으로 두 가지 개념은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두 개념이 분명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한 연구는 비핵지대와 비핵화를 구분하는 것은 “개념을 작위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철기,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韓國國際政治論叢』, 37집 2호 (1997), p. 28 참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두 개념이 명분과 내용 모든 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간과한 것이다.

20) 「조선일보」, 1991년 12월 19일.

21) 위의 글.

재선언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이 완전히 철수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sup>22)</sup> 이 선언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의 시발점이었다. 한국은 북한핵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sup>23)</sup>

제5차 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 개최되었다. 북한은 이전의 비핵지대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처리·농축시설의 포기를 제안했을 뿐만아니라 핵우산보장협정 금지, 핵무기탑재 가능 비행기와 함선의 출입·통과·방문 금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한은 몇 차례의 협상 끝에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였는데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는 비핵8원칙 천명
-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을 이용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 금지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

22) 김종희 당시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1월에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관한 선언을 하고 핵무기부제를 12월에 확인한 것은 주한미군의 핵무기철수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盧泰愚 前대통령의 肉聲회고록,” p. 135.

23) 이종구 국방부장관의 국회발언, 「한국일보」, 1991년 12월 17일.

## 사찰 실시

###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북한의 비핵지대주장은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의 타결을 계기로 수정된 듯이 보였다. 비핵화공동선언의 협상에서는 “비핵지대화” 대신에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핵우산보장협정 체결 금지나 핵무기 탑재가능한 비행기나 함선의 출입·통과·방문 금지도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북한이 핵문제에 관하여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대일수교와 대미관계정상화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포기와 국제핵사찰수용을 관계개선의 선행조건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전술적인 변화였을 뿐이며, “비핵지대” 주장을 통해 성취하려던 전략적 목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후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과 핵사찰협상 개시

북한은 핵문제해결을 위한 대표접촉에서 IAEA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할 것을 약속하였고, 1992년 1월 7일 비엔나 주재 국제기구대표부 대사를 통해 서명시한을 1월말로 밝혔다. 같은 날 한국국방부도 1992

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sup>24)</sup>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으나 후속조치인 IAEA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북한은 마침내 1992년 1월 30일 협정에 서명하였고,<sup>25)</sup> 4월 9일 이를 비준하였다.<sup>26)</sup> 이 협정에 의거하여 북한은 1992년 5월하순부터 6월초에 실시된 제1차 임시사찰을 시작으로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게 되었다. 북한은 제2차 임시사찰 기간중인 1992년 7월 10일 IAEA와 세부적인 사찰방식을 규정하는 보조약정을 체결하였다.

1992년 2월 18~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등 세가지 문건을 발표시켰다. 그러나 양측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조치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국은 북한이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할 것을 추구하고 시범사

24) 「중앙일보」, 1992년 1월 7일.

25) 1992년 1월 22일 캔터(Arnold Kanter) 미국무부정무차관과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을 대표로 하는 북미간 첫 고위급회담이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수용을 약속한 대가로 미국측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의 사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주한미군기지의 사찰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창림 북한순회대사 발언, 「중앙일보」, 1992년 6월 19일자; 북한의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2년 6월 26일; 김영남 북한외교부장 마이니치신문 기자회견, 「한국일보」, 1992년 10월 3일. 미국의 해리슨(Selig Harrison)은 미국이 캔터·김용순 회담 이후 “당근과 채찍 정책”을 포기하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수행했으며, 이는 미국이 북한내부의 강은과간 갈등에 무감각해지고 개혁파의 입지를 점차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Selig Harrison, “Korea at the Crossroads: Absorption, Confederation or Chaos?”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주최 국제학술토론회, 1993년 4월 9~10일, p. 6.

26) 북한이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한 후 규정대로 18개월내에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북한에게 부정확한 협정문안을 보낸 IAEA의 실수도 한가지 원인이었다. Andrew Mack,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p. 90. 그러나 1987년 6월 IAEA는 정확한 문서를 다시 보냈으며 이후 18개월까지(1988년 12월)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책임이다.

찰과 상호사찰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한국의 사찰제의를 거부하면서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의 대가로 남한 내의 모든 주한미군기지가 사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2년 2월 27일 남북한은 핵통제공동위원회구성을 위한 대표접촉을 재개하였다. 한국은 4월 중순까지 사찰규정을 마련하여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상호사찰을 실시하고 시범사찰은 더 일찍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사찰제안을 거부하면서 비핵화공동선언 제1~3항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후 사찰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은 외세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다섯차례의 대표접촉을 거듭한 끝에 남북한은 1992년 3월 14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핵통제위원회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한은 각각 7명의 위원과 6명의 수행원으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핵통제위원회합의서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다:

-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에 관한 부속문건의 채택·처리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 사찰단의 구성·운영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의 선정, 사찰절차와 방법 및 사찰장비에 관한 사항 합의
-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의 합의·이행
-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사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1992년 3월 19일 개최된 제1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이행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이행합의서에서 북한은 “비핵시대” 주장시 거론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하였고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은 이행합의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행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①외국군대의 핵무기 저장·배비 금지, ②외국핵무기의 영토진입 금지, ③핵무기사용을 위한 작전·연습 참가 금지, ④핵무기사용을 가상한 작전·훈련의 영토내 허용 금지, ⑤핵무기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조약의 체결금지, ⑥핵무기 생산을 전제로 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수입금지, ⑦핵국들로부터 한반도비핵화의 지위를 보장받고 외부의 핵위협을 막기 위해 공동노력함. 이행합의서의 이러한 내용은 북한이 이전에 주장했던 “비핵시대” 입장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체결시 양보하는 듯 하였지만,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기존의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협상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사찰과 관련하여, 북한은 사찰대상을 핵시설과 핵무기 및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사찰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한국은 별도의 부속합의서 없이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제시하며 남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기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각종 관측장비와 정보수집수단을 통해 상대측의 비밀스런 핵개발이나 핵무기 반입 등 비핵화공동선언의 위반징후가 포착될 경우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4월 1일 개최된 제2차 회의와 4월 21일의 제3차 회의에서도 쌍방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

1992년 5월 5~8일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연

락사무소,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및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연형묵총리는 한국이 분과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없는 핵사찰문제를 전제조건화 하는 것은 부당하며, 핵사찰실시를 조건으로 기본합의서 이행을 보류한다면 애초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은 한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sup>27)</sup> 반면, 한국의 정원식총리는 기초발언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의 관건은 남북상호사찰의 실현에 있으므로 쌍방은 약속대로 철저한 사찰제도를 갖춘 상호사찰을 6월 초순께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호사찰에서는 사찰을 원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사찰대상을 지정하고 상대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는 특별사찰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28)</sup>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핵통제위원회합의서 체결시 양해한 바와 같이, 5월말까지 핵사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발효시킨 후 20일내에 핵사찰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고,<sup>29)</sup> 이를 위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5월 12일 갖기로 합의하였다. 최우진 북한측핵통제공동위원장은 제4차 회의에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sup>30)</sup>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하였으나 북한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1992년 5월 12일 개최된 제4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27) 연형묵총리 기초연설문, 「남북대화: 제55호」(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2), pp. 52~53.

28) 정원식총리 기초연설문, 「남북대화: 제55호」(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2), pp. 32~34.

29) 공로명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 기자간담회, 「한국일보」, 1992년 5월 9일.

30) 위의 글.

에서 북한은 이행합의서와 그 부록인 사찰규정의 일괄합의·채택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은 사찰규정을 먼저 토의·완료한다면 이행합의서문제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한은 사찰규정에 대한 실무토의와 합의서문안의 정리를 위해 별도의 위원 접촉을 개최할 것과 제5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1992년 5월 27일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차례의 위원접촉과<sup>31)</sup> 제5차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남북한은 실질적인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제5차 핵통제공동위원회 이후 북한핵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사찰이 세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sup>32)</sup>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6월 30일의 제6차 회의와 7월 21일의 제7차 회의를 거쳐 8월 31일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사찰규정의 기본운곽에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필요시 이행합의서를 토의한다는 전제하에 사찰규정을 먼저 토의하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사찰규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sup>33)</sup>

- 제1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교환
- 제2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운영
- 제3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의 선정
- 제4장: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절차와 방법
- 제5장: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와 분쟁의 해결
- 제6장: 신변보장 및 편의제공
- 제7장: 수정·발효 및 기타

31) 세차례의 위원접촉은 각각 1992년 5월 15일, 20일, 2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32) 세차례의 임시사찰은 각각 5월 25일~6월 5일, 7월 7일~20일, 9월 1일~1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33) 「남북대화: 제56호」(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2), p. 115.

1992년 9월 15~18일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서와 기본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세 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리고 화해, 군사, 경제교류협력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등 네 가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의 연형묵총리는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의거하여 북한의 영변핵시설과 남한의 주한미군기지를 사찰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상호동수원칙에 의거하여 양측의 원자력시설과 군사시설을 함께 사찰하고 일방의 요구로 불시에 실시하는 특별사찰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사찰제안을 강력히 비판하였다.<sup>34)</sup> 한국의 정원식총리는 비핵화공동선언은 우리겨레가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남북상호사찰은 핵문제해결의 첫걸음이며 한반도비핵화실현의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핵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IAEA 사찰과 동시에 상호사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 한국의 사찰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9월 19일 제4차 위원접촉과 9월 30일 제5차 위원접촉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사찰규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은 1992년 9월 30일까지 여덟차례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다섯차례의 위원접촉을 진행했지만 사찰대상 선정과 사찰방법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34) 핵사찰과 관련한 남북한 입장차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4~17.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정보교환 대상 가운데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는 등 사찰규정에 대한 실질토의를 진행하였다.<sup>35)</sup>

#### 4. 남북대화 중단과 핵사찰협상 실패

세차례에 걸친 IAEA의 임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미양국은 1992년 10월 8일 제24차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남북한관계 특히 상호사찰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는 경우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sup>36)</sup> 이에 대해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면서,<sup>37)</sup>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남북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이로 인해 1992년 11월 6일 이전으로 예정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설치가 무산되었고, 1992년 11월 개최 예정이던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 회의와 12월 21일로 예정되었던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취소되었다.

북한은 이후 개최된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도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1992년 10월 14일 개최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위원접촉을 시작으로 1993년 1월 25일까지 모두 다섯차례의 전체회의와 세차례의 위원접촉 및 한차례의 비공개 위원장접촉이 더 개최되었다. 그

35) 「한국일보」, 「동아일보」, 1992년 9월 20일.

36) 이보다 앞서 1992년 5월 31일 리스카시(Robert RisCassi) 주한미군사령관은 星條紙와의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주한미군감축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언급하고 한미간에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2년 6월 1일.

37) 「로동신문」, 1992년 10월 13일.

러나 북한이 팀스피리트훈련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상호핵사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93년 1월 26일 한미양국은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동시에 발표하였다.<sup>38)</sup>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29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로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결상태에 빠진 모든 북남당국 사이의 대화를 굳이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하였다.<sup>39)</sup> 결국 남북한은 1993년 1월 25일까지 13차례의 핵통제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8차례의 위원접촉 및 1차례의 비공개 위원장접촉을 가졌으나 사찰대상 선정과 사찰방법에 대한 양측의 첨예한 의견대립, 북한의 핵개발의혹 증폭 및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협상이 중단되었다.

IAEA는 1993년 2월까지 실시한 여섯차례의 임시사찰<sup>40)</sup> 결과 북한이 IAEA에 신고한 내용과 사찰결과 사이에 “중요한 불일치”(significant inconsistencies)가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하고자 하였다.<sup>41)</sup> 그러나 북한은 특별사찰수용을 거부하였고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였다. 1995년에 NPT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회의를 앞두고 있던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3년 6월 2~11일 제 1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한핵문제의 해결구도는 남북한에서 북미관계의 틀로 전환되었다.<sup>42)</sup>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0

38) 「중앙일보」, 1993년 1월 26일.

39) 「로동신문」, 1993년 1월 30일.

40) 1992년 11월 2일~14일, 12월 14일~20일, 1993년 1월 26일~2월 6일에 걸쳐 세차례의 추가 임시사찰이 실시되었다.

41) IAEA Resolution GOV/2636, February 25, 1993.

42)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월 21일 북미간에 제네바기본합의문이 타결되어 북한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현재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함경남도 신포에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건설중에 있다.

### Ⅲ. 비핵화공동선언실천의 장애요인

#### 1. 남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의혹

남북한의 핵개발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의혹은 핵비보유지를 천명한 비핵화공동선언 자체의 신빙성 뿐아니라 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여부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남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남북한의 선언실천의 지를 약화시키고 핵비보유정책을 수행하는 데 좌절감을 안겨줌으로써 선언이행의 가장 큰 외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 프랑스에서 재처리시설을 도입하려 한 이래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을 중단하였고, 1990년대에는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각종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핵개발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연구개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활동에 유형·무형의 제약이 가해져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조심스럽게 논의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주요 현안으로 존재하고 있다. 체네바기본합의문에 의거하여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을 밟고 있지만 과거핵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금창리핵문제가 제기되는 등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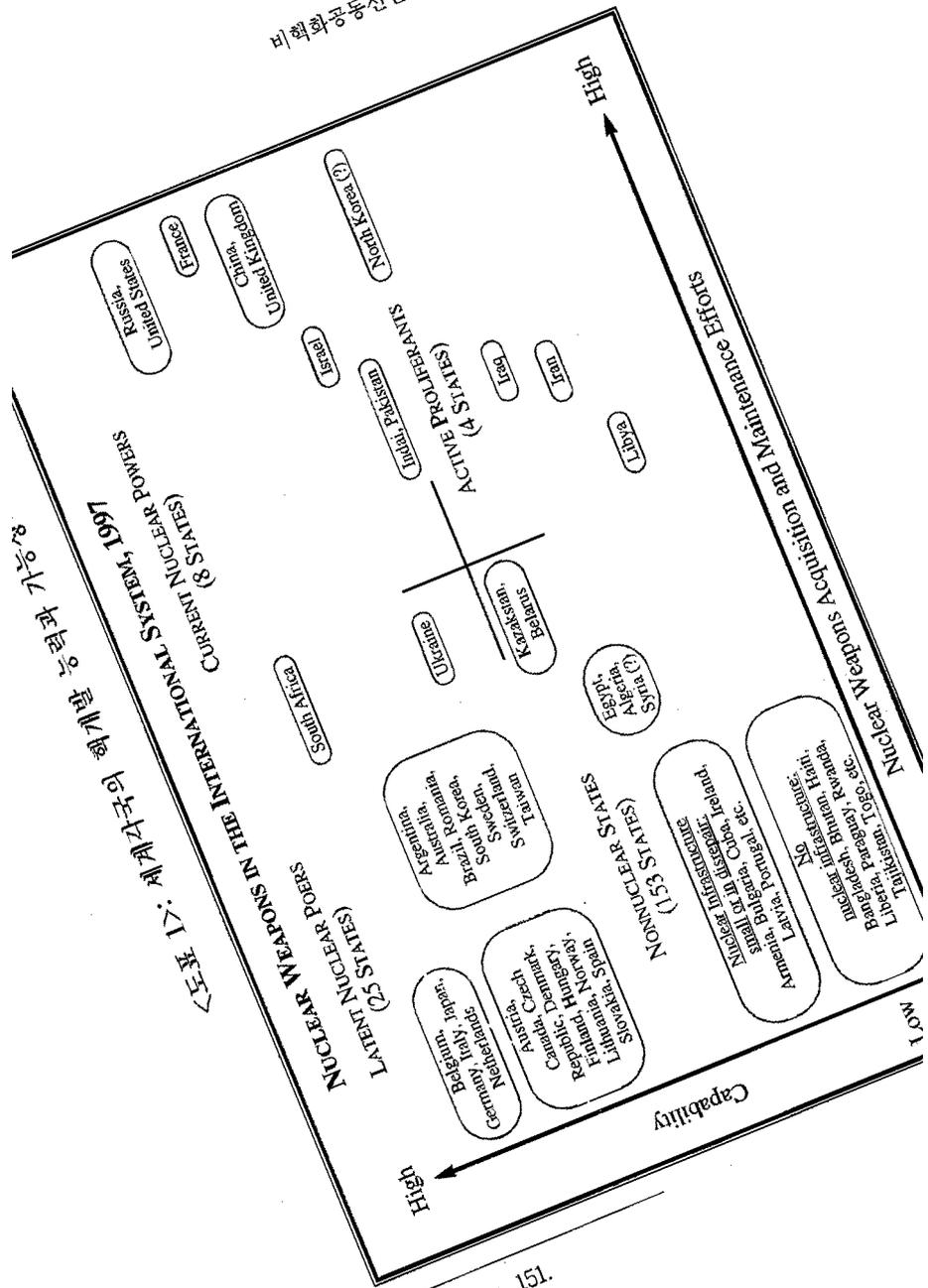
남북한의 핵개발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다음 두 가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핵비확산 정치구도하에서 대량파괴무기의 수출통제체제의 관점에서 양측의 지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버치와 커피(Bertsch and Cupitt)은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전세계 국가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등급으로 분류하였다.<sup>43)</sup> 첫째, 현존하는 네가지 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이거나 지침을 이행하는 조율국들로서 기술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일부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체제에도 가입할 의사를 갖고 있는 협력국들이다. 한국은 협력국으로 분류된다. 셋째, 수출통제체제를 이행할 제도적·법적 장치는 갖고 있지만 이행에 따른 정치·경제·군사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민감국들로서 중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넷째, 기존의 수출통제체제에 반대하면서 통제대상물품을 획득·생산하는 위협국들이다.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주변국들이다.

둘째, 각국의 핵개발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양측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와 함께 적극적인 핵확산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남한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대만과 함께 핵개발노력이 미약하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며 능력면에서는 잠재적으로 핵무장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44)</sup>

43) Gary Bertsch and Richard Cupitt, "Nonproliferation in the 1990s: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 in Brad Roberts, ed., *Weapons Proliferation in the 1990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5), p. 125.

44) Scott D. Sagan,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Current History*,



〈표 1〉: 세계각국의 핵개발 능력과 핵무기 보유 현황

이상의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남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핵개발의혹과 그로 인한 연구개발의 장애는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즉 핵개발가능성에서 스웨덴, 스위스, 호주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평가되고, 쟁거위원회, 원자력공급그룹, 바세나르체제 및 호주그룹 등 네가지 주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함으로써 협력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 비해 더 많은 핵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럽의 경우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라는 지역기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핵개발가능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개발을 우려한 국제적인 견제가 한국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차원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견제가 유럽에 비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남북한 모두 어느 정도의 핵개발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의혹을 받고 있지만 남한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많은 의혹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문제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남한과 달리 자력으로 재처리를 포함한 후행핵연료주기를 완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핵비확산 차원에서 사실상 남북한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남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인식에 근거한다. 첫째, 남북한은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점이다.<sup>46)</sup> 둘

46) 예를 들어, 미에너지부의 보고서는 남북한이 핵보유를 심각히 고려할 만한 정치군사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U.S. Department of Energy, "Policy forum: energy futures,"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96), p. 94.

제, 국제사회에서 보기에 남북한은 핏줄과 문화 그리고 역사와 정서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유사한 행동패턴을 보일 것이므로 어느 한쪽이 핵개발을 하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의혹은 결국 남한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오며 이 점에서 남북한은 같은 배를 타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 2. 선언의 내재적 문제점

비핵화공동선언은 국가정책으로서 입안·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비핵화공동선언을 실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비핵화공동선언의 모태가 되었던 노태우대통령의 1991년 11월 8일 선언은 문안작성과 검토과정에서 한국 원자력계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핵심기술인 재처리·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이는 그의 회고에서 밝혀진 대로 매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즉 1991년 당시 영변에 공장규모의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이 건설중임이 밝혀지는 등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재처리·농축시설의 보유를 먼저 포기함으로써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하려 했던 것이다. 재처리·농축시설의 보유금지 입장은 이후 체결된 비핵화공동선언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저지라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정책으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부처와 전문가집단이 배제된 채 정책이 입안되었

다는 점이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아니라 해당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집단의 반발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였다.

둘째, 비핵화공동선언은 한국의 에너지원확보라는 에너지안보 차원 뿐아니라 과학기술 및 군사·전략적 차원에서도 분명히 중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정책이었다. 즉 군사적 목적 뿐아니라 평화적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핵의 양면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경제, 과학, 기술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다른 분야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 특히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농축시설 보유금지 부분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들 뿐아니라 정부의 고위관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에 의해 비판되었다. 예를 들어, 1994년 이홍구 당시 통일부총리는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면 비핵화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북한이 방사화핵실험을 계속 유지할 경우 비핵화공동선언을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언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sup>47)</sup> 하지만 국제사회의 견제로 인해 더 이상의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sup>48)</sup> 아울러 대통령 자신 혹은 국가간의 공동선언이 갖는 정치적 구속력을 고려할 때,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농축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허용하도록 선언의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잘못하면 국제사회가 남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핵개발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7) 「한국일보」, 1994년 5월 13일; 「한겨레신문」, 1994년 5월 24일.

48) 한 예로서, 1994년 7월 하와이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후원으로 개최된 동북아의 핵과 안보문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일본 시즈오카대학의 이즈미(Hajime Izumi)교수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가능성에 대한 한국고위관리들의 발언횟수까지 지적하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1994년 7월 18일 필자와의 의견교환.

셋째, 비핵화를 규정한 두 선언은 정책구상이나 집행에 앞서 국회와 사전협의의 하거나 공청회 혹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상황에서 비핵화에 관한 두 선언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회와 민간단체들을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로 적절히 활용했다면 대미 및 대북관계에서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넷째,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한 후에라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비핵정책의 진실성을 수용하도록 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했을 것이다. 비핵화공동선언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남한이 독자적으로 비핵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조치라도 강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자신은 결백하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부각시켜 최대의 안보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을 뿐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비난을 통해 역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우선, 북한핵문제를 남북한간에 조용히 해결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북한핵문제의 국제화를 야기하고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대한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한국의 강박 관념적 대응은 남한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핵개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냄으로써 오히려 한국이 견지해 온 비핵정책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측 모두 선언의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이행되지 못한 선언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sup>49)</sup> 또한 이 선언의 법적 구속력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적절한 비준절차를 거친 북한과 달리, 한국의 경우 기본합의서를 포함하여 1990년대 초 합의된 모든 남북한간 합의문서가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정치적 구속력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비핵화공동선언을 포함한 당시의 합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남북한이 새로운 합의서를 만들어야 하고, 새롭게 정비된 합의서는 모두 비준을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sup>50)</sup>

### 3. 조약의 구성요건 결여

비핵화공동선언은 국제조약의 구성요건면에서 볼 때, 구체성과 실천성 등 조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비핵지대조약들과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51)</sup>

첫째, 비핵화공동선언은 본문 6개조와 핵통제위원회합의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조약들에 비해서 구성도 허술하고 내용도 빈약하다.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중요한 조항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둘째, 조약의 적용지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통상의 관할지역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1999년 5월 발생한 서해에서의 해상충돌을 계기로

---

49) 최상진, 「비핵지대의 확산과 ‘동북아 제한비핵지대’ 설치안」(서울: 세종연구소, 1997), p. 50.

50) 베를린대학교 서병문교수와의 의견교환, 1999년 7월 13일.

51) 이철기,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p. 50 참조.

남북한간에 해상경계선과 관할지역 설정문제가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부상하였다. 셋째, 공해자유의 원칙과 무해통과·통항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북한의 “비핵지대” 주장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제한받지 않으려는 한국의 “비핵화” 입장이 관철된 것이 한 요인이긴 하지만, 매우 수세적인 문제해결방식임에 틀림없다. 넷째, 비핵화공동선언은 국제적 보장장치 즉, 핵국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핵국들이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정지역의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포기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비핵국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다섯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상호사찰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효과적인 사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IV. 비핵지대에 대한 고찰

### 1. 비핵지대의 정의와 논의

#### 가. 비핵지대의 정의

1975년 11월 11일 채택된 유엔총회결의안 제3472B(XXX)는 비핵지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52)</sup>

1. 비핵지대는 일반적으로 일단의 국가들이 주권을 자유로이 행사하여 조약이나 협약의 형태로 다음사항을 규정한 유엔총회가 인정한 지대이다.
  - a. 해당지역에서 기존 핵무기의 폐기를 포함하여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에 대한 법령이 정해진다.
  - b. 법령에 의거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검증시스템이 설립된다.

또한 비핵지대와 조약당사국들에 대한 핵국의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유엔총회가 인정한 모든 비핵지대에서 모든 핵국들은 조약이나

---

52) Tariq Rauf, "Consideration of Mongolia's nuclear-weapon-free status," paper presented at the Regional Disarmament Meeting in Asia and the Pacific in Mongolia on *Security Concepts in a Changing World*, sponsored by the UN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 held on August 3~5, 1999, pp. 3~4.

협약 또는 의정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수단을 통해 다음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 a. 비핵지대조약에서 규정한 핵무기의 완전부재에 관한 법령을 존중한다.
- b. 비핵지대조약의 위반행위에 어떤 형태의 기여도 하지 않는다.
- c. 비핵지대 조약당사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비핵지대를 창설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다음 일곱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sup>53)</sup>

1. 비핵지대는 대륙전체 혹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 뿐만 아니라 몇 개 국가들이나 개별 국가에도 창설될 수 있다.
2. 비핵지대내에는 핵무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해당지역의 국가들이 비핵지대창설의 이니시어티브를 가져야 하며, 참여결정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4. 비핵지대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당지역내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모든 국가들이, 가능하면 역내의 국가들이 모두 가입해야 한다.
5. 비핵지대조약은 합의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6. 비핵지대조약의 창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을 통해 조약당사국들의 경제, 과학, 기술적 발전을 증진해야 한다.

---

53) UN Document A/10027/Add.1.

7. 비핵지대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어야 한다.

한편 1978년에 개최된 「제1차 유엔군축특별회의」(First UN Special Session on Disarmament: UNSSOD I)는 비핵지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60. 해당지역의 관련국들이 자유롭게 합의한 기초위에서 만들어진 비핵지대는 중요한 군축방안의 하나이다.
61. 세계 각지에서 비핵지대를 설치하는 과정은 전세계를 핵무기로 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궁극적 목적하에 장려되어야 한다. 비핵지대의 설치과정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핵지대 조약당사국들은 비핵지대조약의 모든 목표와 목적 및 원칙을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62. 비핵지대에 대하여 핵국들은 비핵지대 조약당사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a. 비핵지대의 지위를 엄격히 존중한다.
  - b. 비핵지대내 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제1차 유엔군축특별회의는 비핵지대창설에 따른 여섯가지 요소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다.

1. 해당지역의 국가들이 비핵지대창설의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
2. 비핵지대조약은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3. 비핵지대조약은 해당지역내에서 핵무기의 완전한 부재를 보장해

야 한다.

4. 검증장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5. 조약의 적용지역이 지리적으로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6. 비핵지대조약은 유엔총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유엔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 UNDC)가 비핵지대의 창설에 관한 문서를<sup>54)</sup> 채택하면서 비핵지대창설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지침을 20개항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8. 아래에 제시하는 원칙과 지침은 비핵지대 창설과정에서 이러한 원칙과 지침이 조화롭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까지의 실천과 경험에 기초하여, 비핵지대를 개발해나가는 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일부 모아놓은 것이다.
19. 비핵지대창설은 다양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비핵지대가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은 범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0. 비핵지대는 역내 관련당사국들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1.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비핵지대창설의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
22. 특정지역에서 비핵지대를 창설한다는 목표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련 당사국들의 이러한 노력은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국

---

54) Establishment of nuclear-weapon-free zones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freely arrived at among the States of the region concerned, *Chairman's Paper/Rev.4*, April 24, 1999.

제사회는 비핵지대창설을 위해 노력하는 역내국가들에 대해 유엔의 핵심적인 역할을 포함하여 지원을 실시한다.

23.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하여 비핵지대의 협상과 창설에 참여해야 한다.
24. 비핵지대의 지위는 조약당사국들 뿐아니라 비핵지대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협력과 지지가 필수적인 모든 국가, 즉 핵국을 포함한 역외국가들과 역내에 영토를 보유하거나 역내 일부영토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갖는 모든 역외국가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25. 조약과 관련 부속의정서의 협상과정에서 핵국들과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조약가맹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속의정서에 대한 핵국들의 서명·비준을 촉진하도록 한다.
26. 역내에 영토를 보유하거나 역내 일부영토에 대해 국제적인 책임을 갖는 역외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국가와도 조약과 관련 부속의정서의 협상과정에서 협의를 진행하여 부속의정서의 서명·비준을 촉진하도록 한다.
27. 비핵지대의 창설과정에서 역내의 모든 타당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8. 비핵지대창설은 조약당사국들이 이미 서명한 핵비확산 및 군축분야의 다른 조약들에 대한 그들의 법적 의무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29. 비핵지대조약에 대한 조약당사국들의 의무는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30.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합의사항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국

제법의 원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

31. 조약당사국들은, 주권을 행사하고 조약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편견이 없이, 외국함선·항공기의 기항(기착)과 통과(항)을 허용할지 여부를 무해통과(항)의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32. 조약당사국들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 비핵지대조약은 조약당사국들이 기존의 지역적, 국제적 협정하에서 갖는 의무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약당사국들의 헌법적 요구에 부합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유엔헌장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 및 국제법과 모순됨이 없어야 한다.
33. 비핵지대는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핵폭발장치의 개발, 제조, 통제, 소유, 실험, 배치 및 수송을 효과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조약당사국이 비당사국의 핵폭발장치를 역내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도록 규정해야 한다.
34. 비핵지대내의 모든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 전면안전조치의 적용을 포함하여 비핵지대에 대한 효과적인 준수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35. 비핵지대는 경계선이 분명히 정의되고 조약당사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지리적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36. 핵국들은 관련 부속의정서에 서명·비준하면서 비핵지대규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포함하여 그들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조약당사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금지한다는 법적 구속력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
37. 비핵지대는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비핵지대조약의 내용에 반영되는 경우, 조약당사국들의 사회·경제·과학·기술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비핵지대내에서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간,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 나. NPT 평가회의에서의 논의

NPT 발효 이후 다섯차례 개최된 평가회의와 그 이후의 많은 국제 회의에서 비핵지대창설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 (1) 제1차 NPT 평가회의<sup>55)</sup>

최종선언문은 지역당사국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주도하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핵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해당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핵지대조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비핵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국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가나, 네팔,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5개국은 NPT에 가입한 비핵국영토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세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초안을 제출하였다:<sup>56)</sup> ①NPT에 가입한 핵국들이 NPT에 가입한 비핵국의 영토에서 모든 핵무기, 특히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할 것, ②NPT에 가입한 비핵국

---

55) 제1차 평가회의는 세차례의 준비회의를 거쳐 1975년 5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96개 정회원국 중 58개국이 회의에 참가했으며 NPT에 가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15개국 중 7개국이 의사결정권없이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NPT에 서명하지 않은 7개국도 회의를 참관하였다.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었다. *Final Declaration of the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30/Rev. I, Annex I, May 30, 1975.*

56)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C.I/L.1.*

의 영토에 대한 일체의 핵무기배치를 즉각 중지하고 점진적으로 핵무기를 철수할 것, ③영토, 영해, 영공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NPT에 가입한 비핵국은 NPT에 가입한 다른 비핵국들에 대한 이들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허락하지 말 것. 또한 멕시코를 비롯한 11개국<sup>57)</sup>들은 미·영·소에 대해 비핵지대창설을 장려하고 설치된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종선언문은 비핵지대가 해당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핵국이 비핵지대내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비핵지대제안별로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안전보장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가 결정되어야 하며, 비핵지대조약의 범위와 내용에 합의하기 전에 핵국들의 안전보장약속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sup>58)</sup> 소련은 비핵지대가 진정으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며 이러한 상태를 위반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59)</sup> 사용할 무기의 종류와 행동양식에 제약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미국<sup>60)</sup>과 달리, 소련이 전통적으로 핵무기

57)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가나,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루마니아, 세네갈, 수단,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등이다.

58)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76*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76), p. 386. 한편,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의 제Ⅱ의정서에 의거한 미국과 영국의 핵불사용약속은 조건부로서 핵국의 지지나 지원아래 해당 비핵지대의 조약당사국이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핵불사용약속을 재고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Jozef Goldblat, "Nuclear weapon-free zones: lessons from the existing agreements," in Darryl Howlett and John Simpson, eds.,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3), p. 58.

59)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86. 소련은 중남미지역이 진정한 비핵지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의 제Ⅱ의정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다가 5개 핵국중 가장 늦게 1978년 5월 18일 서명하였다.

의 (선제)사용을 선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련의 이러한 조건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소련은 핵무기 (선제)사용금지를 위한 회의개최도 제안한 바 있으며,<sup>61)</sup> NPT 협상시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비핵국 영토에 대해 핵무기불사용을 보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기도 했었다.<sup>62)</sup> 한편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975년 7월 12~15일 개최된 제6차 「이슬람외무장관회의」(The Sixth Islamic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에서는 다음과 같은 타협안이 제시된 바 있다:<sup>63)</sup> 핵공격이나 공격위협에 대비하여 핵국과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을 받지 않는 비핵국들에 대해 핵국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2) 제2차 NPT 평가회의<sup>64)</sup>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참가국들은 비핵지대창설이 해당지역에서의 핵무기확산을 막고 역내국가들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핵국들이 비핵지대내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희망하였다. 중

---

60) *Special message of the US President to Congress*, 28 March 1961.

61) *UN Document A/6834*.

62) Frank Barnaby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p. 386. 소련의 제안은 "코시킴포블라"(Kosygin formula)라고 한다.

63) *Ibid.*, pp. 386~387.

64) 제2차 평가회의는 세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1980년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일본과 스위스 등 원자력선진국들을 비롯하여 20여개국이 추가로 NPT에 가입하여 평가회의 개최 당시 NPT 회원국 총수는 114개국이었으며 이중 75개국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NPT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이집트가 의사결정권없이 회의에 참가했고 NPT에 가입하지 않은 11개국이 회의를 참관하였다. 제VI조의 핵군축문제에 대한 77그룹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했다.

남미비핵지대와 관련하여, 평가회의 참가국들은 중남미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5개 핵국이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의 제II의 정서에 의거하여 중남미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sup>65)</sup>

### (3) 제3차 NPT 평가회의<sup>66)</sup>

최종선언문은 특정지역의 핵무기부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국가들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제VII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또한 제1차 유엔군축특별회의의 최종문서가 밝힌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준하여 비핵지대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핵군축이 비핵지대창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최종선언문은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의 이행에 만족을 표시하고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의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제35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중동지역의 비핵지대 창설제안이 이행되기를 촉구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개발이 유엔의 「아프리카비핵화선언」(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Africa)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난하였다.

65)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 VI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Question of the Security of Non-Nuclear-Weapon States*,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paragraph 1 and 2.

66) 제3차 평가회의는 세차레의 준비회의를 거쳐 1985년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30개 조약가맹국중 86개국과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콜롬비아와 예멘아랍공화국 등이 참가했으며 최종선언문이 채택되었다. *The Third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85, Final Declaration, Review Document NPT/CONF.III/64/I, Annex I*, 1985.

최종선언문은 비핵지대조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핵국들이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비핵지대내 국가들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안 255호에 명시된 적극적 안전보장에 대한 NPT 회원국들의 결의에 주목하고 유엔총회 제10차 특별회의의 최종문서 제59항이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금지하는 조약의 체결을 촉구했음을 지적하였다. 군축회의에서 소극적 안전보장을 국제조약화 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4) 제4차 NPT 평가회의<sup>67)</sup>

비핵지대의 창설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되었고 역내국가들의 합의에 기초한 비핵지대가 중요한 군축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아울러 비핵지대창설에는 각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핵국들은 비핵국들의 비핵지대 창설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중남미비핵지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것에 주목하면서 유엔총회가 프랑스로 하여금 이 조약의 제 I 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한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이 발효되었으나 중국과 소련만이 제 II, III 의정서에 서명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당시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이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67) 제4차 평가회의는 세차레의 준비회의를 거쳐 1990년 8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84개 조약가맹국과 중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14개 참관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평가회의는 1995년에 NPT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와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을 체결하는 문제를 연계하는 데에 대한 관련국들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선언문 채택에 실패하였다.

영국은 제 I, III의정서에 대한 지역당사국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에 프랑스는 이 지역에서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모든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sup>68)</sup> 또한 아프리카비핵지대와 관련하여 제3차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에 표명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지지하였다.

제4차 평가회의에서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간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IAEA 안전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조약당사국들이 이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69)</sup> 이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관련 당사국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의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핵지대 설치문제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이나 지대를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 한반도는 이와는 다른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비핵지대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70)</sup>

#### (5) 제5차 NPT 평가회의

1995년에 개최된 제5차 평가회의는 NPT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1970년 발효 당시의 NPT

68) David Fischer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PRI Yearbook 1991*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1), p. 574.

69)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報告書」(서울: 외무부, 1990), p. 29.

70) 위의 글.

조약에는 유효기간을 일단 25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문제를 합의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5년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여간 계속된 회의에는 전체 178개 회원국중 175개국이 참가했으며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최종문서를<sup>71)</sup> 채택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종문서에는 네가지의 결의안이 첨부되어 있다. 우선 회의참가국들은 NPT가 무기한 효력을 갖는다는 데 합의하였다.<sup>72)</sup> 이에 대한 대가로 비동맹권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조약검토절차 강화결의안과<sup>73)</sup> 핵비확산 및 군축의 원칙과 목적에 관한 결의안을<sup>74)</sup>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최하되 3년 전부터 매년 준비회의를 가질 것과 NPT의 보편성, 핵군축, 비핵지대, 안전보장, 안전조치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중동지역을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중동에 관한 결의안도<sup>75)</sup> 채택하였다.

비핵지대와 관련하여, 핵비확산 및 군축의 원칙과 목적에 관한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을 선언하였다.

5. 해당지역 국가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것은 세계적 및 지역적 평화와

---

71) 1995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Final Document, 1995.

72) Decision entitled "Extension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1995/32/DEC.3.

73) Decision entitled "Strengthening the Review Process for the Treaty," NPT/CONF.1995/32/DEC.1.

74) Decision entitled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1995/32/DEC.2.

75) Resolution on the Middle East, NPT/CONF.1995/32/RES/1.

안전을 증진한다는 신념을 재확인하였다.

6. 특히 중동과 같은 긴장지역에서 비핵지대의 설립과 비대량살상 무기지대의 창설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차기 평가회의 개최시점인 2000년까지 추가로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것을 환영한다.
7. 모든 핵국들의 협력과 관련 조항에 대한 그들의 존중과 지지는 비핵지대조약과 부속의정서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필요하다.

#### (6) 제5차 NPT 평가회의 이후의 논의

1996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유엔군축위원회에 역내국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한 비핵지대 창설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UNDC는 1997년 4월부터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1998년 12월 유엔총회는 UNDC의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보고서의 부록Ⅱ의 제48항은 비핵지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sup>76)</sup>

48. 국제사회는 비핵지대에 관련된 보다 많은 이니셔티브, 제안 및 현안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일국비핵지대의 창설에 관한 제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76) Tariq Rauf, "Consideration of Mongolia's nuclear-weapon-free status," p. 2.

## 2. 비핵지대조약의 사례

### 가. 중남미비핵지대조약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은<sup>77)</sup>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시 브라질정부가 중남미비핵지대결의안(초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이 기원이 되었다. 1963년 멕시코대통령의 주도로 중남미의 5개국정상들이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한 유엔총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1967년 2월 14일 멕시코시의 “틀랫롤코”(Tlatelolco)에서 체결되었다. 일명 틀랫롤코조약이라고 하며 1999년 1월 현재 중남미지역 33개국 중 32개국이 비준하였다.<sup>78)</sup> 1968년 4월 25일 발효되었고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조약의 이행이 자국의 최고이익이나 조약당사국들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영토, 영해, 영공 및 기타 주권행사 지역에서<sup>79)</sup> 핵무기의<sup>80)</sup> 실험,

---

77)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78) 서명만 한 국가는 Cuba이다. *The Arms Control Reporter*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Defense and Disarmament Studies, 1999), p. 459.A.5.

79) 제28조에 의거하여, 역내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고, 관련국들이 모든 부속의 정서를 서명·비준하며, 조약당사국들의 평화적 원자력활동에 대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이 체결되면, 조약의 적용지역을 북미대륙을 제외한 서반구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역내국가들의 영토는 물론 “외각경계선”(outer perimeter)내에 위치한 역외국가들의 속령과 공해도 포함된다. 즉 중남미대륙의 연안에서부터 수백km에 이르는 대서양과 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된다(제4조). 이와 같이, 조약당사국의 영토 뿐 아니라 공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외각경계선개념에 입각한 적용지역 설정방법이다. 이철기,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p. 39.

80) 부분조립되거나 미조립된 핵무기부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 핵무기의 수송 및 추진 수단은 핵무기와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 생산, 획득, 접수, 배비, 저장, 설치, 소유, 통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된다. 항공기와 함선의 통과(항), 기착(항)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1967년 「중남미비핵화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Latin America: CORPEDAL)는 이를 주권국가의 특권으로 해석했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해석이 존중되어왔다. 조약당사국은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의무위반시 총회를 소집하고 IAEA와 유엔에 통보한다. 이행기구인 「중남미핵무기금지위원회」(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OPANAL)와 IAEA가 협력하며 특별사찰은 IAEA가 실시할 수 있다. IAEA의 사찰과 더불어 조약당사국의 일반보고서 제출, 자료의 교환, OPANAL이 요구하는 특별보고서 작성 등 추가적인 검증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분쟁발생시 평화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미해결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제소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의 부속의정서가 있다. 제 I 의정서는 비핵지대내에 영토를 보유한 미·영·불·네덜란드가 해당 영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개국이 모두 서명·비준하였다. 제 II 의정서는 5개 핵국이 비핵지대를 존중하며 조약가맹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 핵국이 모두 서명·비준하였다.

#### 나.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은<sup>81)</sup> 1983년 핵국들이 남태평양지역에서 벌이는 활동, 특히 핵실험을 우려하여 호주정부가 「남태평양포럼」

(South Pacific Forum)에서 이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1985년 8월 6일 “쿡아일랜드”(The Cook Islands)의 “라로통가”(Rarotonga)에서 체결되었다. 일명 라로통가조약이라고도 하며 1999년 1월 현재 남태평양 14개국 중 12개국이 서명·비준하였다.<sup>82)</sup> 1986년 1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항”이 위반되었을 경우에만 12개월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내수, 영해, 다도해역, 해저와 하층토, 영토, 영공에서<sup>83)</sup> 핵폭발장치의<sup>84)</sup> 실험, 제조, 획득, 배치, 배비, 저장, 비축, 설치, 장착, 부착, 수송, 소유 및 통제를 금지하고 있다. 핵폐기물의 해상 및 육상에서의 폐기도 금지된다.<sup>85)</sup>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되며 NPT 제Ⅲ조 2항(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비핵국에 대한 핵물질·시설 제공불가)의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항공기와 함선의 통과(항), 기착(항)의 허용여부는 “공해자유”(freedom of the high seas)와 “무행통과·통항”(innocent transit·passage)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당사국이 결정

81) *The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82) 통가는 1996년 5월 서명만 하였고 마샬군도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The Arms Control Reporter*, p. 459.A.12.

83) 라로통가조약의 적용지역도 외각경계선개념에 기초하여 조약의 부록 I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즉 동쪽으로 틀렛콜코조약의 적용경계선과 접하고, 서쪽으로 호주 서해안과 파푸아뉴기니아와 접하며, 남쪽으로 남극조약의 적용경계선인 남위 60°와 접하고, 북쪽으로 키리바티의 영해에 해당하는 북반구의 일부를 포함하여 대체로 적도와 경계를 이룬다. 그러나 핵무기의 존재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들은 12마일 영해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Jozef Goldblat, “Nuclear-weapon-free zones: a history and assessment,” *The Nonproliferation Review* (Spring-Summer, 1997), p. 23.

84) 부분조립되거나 미조립된 핵무기부품도 포함된다. 핵무기의 수송 및 운반 수단은 핵무기와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85) 핵무기 뿐아니라 평화적 원자력이용의 부산물인 핵폐기물도 금지하는 보다 포괄적인 비핵지대라는 의미에서 조약명칭에 “Nuclear-Weapon-Free” 대신 “Nuclear Free”를 사용하였다.

하도록 규정하였다.<sup>86)</sup> 조약당사국은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행기구인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가 특별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조약당사국의 일반보고서 제출, 자료의 교환, 협의 및 이의제기시 해결절차 등 추가적인 검증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핵국에 대한 원자력수출시에도 해당 핵국이 IAEA의 제한된 안전조치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분쟁발생시 자문위원회에서 해결하고 남태평양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가지의 부속의정서가 있다. 제 I 의정서는 비핵지대내에 영토를 보유한 프랑스, 영국, 미국이 해당 영토에 대한 비핵지대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불은 서명·비준하였고 미국은 서명만 하였다. 제 II 의정서는 5개 핵국이 비핵지대를 존중하며 조약가맹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불·중·러는 서명·비준하였고 미국은 서명만 하였다. 비핵지대내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제 III 의정서에도 영·불·중·러는 서명·비준하였고 미국은 서명만 하였다.

#### 다.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동남아비핵지대조약은<sup>87)</sup> ASEAN이 1971년 발표한 「아세안지역의 평화·자유·중립지역화선언」(The Declaration on the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90년대 초 미소대결이 사라지고 미국이 필리핀의 군기지를 폐쇄함에 따라 협상

86) 핵무장 항공기·함선의 기착(항)이 허용되는 빈도와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허용되는 기착(항)과 허용되지 않는 “배치”, “저장” 등과의 차이점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Jozef Goldblat, “Nuclear-weapon-free zones: a history and assessment,” p. 23.

87) *The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의 가속도가 붙었으며 1995년 12월 15일 태국의 방콕에서 체결되었다. 일명 방콕조약이라고 하며 동남아시아 10개국이 모두 서명하였다.<sup>88)</sup> 1997년 3월 28일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조약당사국은 다른 조약당사국이 조약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12개월전에 사전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영토, 내수, 영해, 다도해역, 해저와 하층토, 영공, 대륙붕, EEZ에 서<sup>89)</sup> 핵무기의<sup>90)</sup> 개발, 실험, 제조, 획득, 배치, 배비, 저장, 비축, 설치, 장착, 부착, 수송, 소유, 통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핵폐기물의 해상 및 육상에서의 폐기도 금지된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되며 NPT 제Ⅲ조 2항의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활동에 관한 안전평가를 조약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하고, 「원자력사고시 조기통보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에 가입해야 한다. 항공기와 함선의 통과(항), 기착(항)의 허용 여부는 공해자유와 무해통과·통항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당사국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가맹국은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행기구인 「동남아비핵지대위원회」(Commission for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를 둔다. 동남아비핵지대위원회는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집행위원회」(Executive

88) 1999년 1월 22일 현재 9개국이 비준하였다. *The Arms Control Reporter*, p. 459.A.15.

89) 영토개념에 입각하여 적용대상지역을 조약당사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규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대륙붕과 EEZ를 적용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핵국들은 적용지역의 범위가 「해양법협약」(Law of the Sea Convention)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약이 핵무장 함선·항공기의 이동을 제한하고 지역안보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조약의 문맥에 따르면 공해자유 원칙과 무해통과·통항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Jozef Goldblat, “Nuclear-weapon-free zones: a history and assessment,” p. 28.

90) 부분조립되거나 미조립된 핵무기부품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 핵무기의 수송 및 운반 수단은 핵무기와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Committee)가 구체적인 검증방안의 이행을 책임진다. IAEA의 사찰관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Fact-Finding Mission)이 특별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 조약당사국의 일반보고서 제출, 자료의 교환, 이의제기, 분쟁해결절차 등 추가적인 검증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분쟁발생시 평화적 원칙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미해결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하였다.

단일 부속의정서에서 5개 핵국이 비핵지대를 존중하며 조약가맹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서명국이 없으나 최근 중국과 인도가 서명의사를 밝혔다.<sup>91)</sup> 부속의정서를 위반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다. 이점은 다른 비핵지대조약에는 없는 내용이다.

#### 라.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은<sup>92)</sup> 1961년 11월 24일 프랑스가 사하라사막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총회가 회원국들에게 아프리카대륙에서 핵실험을 자제할 것과 핵무기를 저장·수송하지 말도록 촉구한 데 기원을 두고 있다. 약 3년후 아프리카정상들은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정상회담에서 유엔의 후원하에 아프리카대륙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유엔총회는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으나 큰

91) 탕자취안(唐家璇) 중국외교부장과 싱(Jaswant Singh) 인도외무장관은 1999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The Associated Press*, July 27, 28, 1999.

92) *The 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진전이 없다가 199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NPT에 가입한 후에 협상이 본격화되어 1996년 4월 11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체결되었다. 일명 펠린다바조약이라고<sup>93)</sup> 하며 1999년 1월 현재 아프리카지역의 53개국 중 49개국이 서명하였다.<sup>94)</sup> 하지만 비준국은 4개국에 불과하여 아직 발효요건인 비준국 수 28개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다. 비정상적인 사건이 조약당사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할 경우 12개월전에 사전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다.

영토, 내수, 영해, 다도해역, 해저와 하층토, 영공에서<sup>95)</sup> 핵폭발장치의<sup>96)</sup> 연구, 개발, 실험, 제조, 획득, 배치, 배비, 저장, 비축, 설치, 장착, 부착, 수송, 소유 및 통제를 금지하고 있다. 핵폐기물의 해상 및 육상에서의 폐기도 금지된다. 핵무기 제조능력을 공표하고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제조시설을 폐기해야 한다.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된다. 항공기와 함선의 통과(항), 기착(항)의 허용여부는 공해자유와 무행통과·통항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당사국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가맹국은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NPT 제Ⅲ조 2항의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이행기구로 「아프리카원자력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Nuclear Energy: AFCONE)를 설치하였고 당사국회의를 2년에 한번씩 개최한다. 특별사찰은 IAEA가 실시한다. 조약당사국의 일반보고

93) “펠린다바”(Pelindaba)는 남아공의 원자력회사본부가 위치한 곳으로서 유엔과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전문가들이 1995년 6월 2일 조약의 초안을 완성한 곳이기도 하다. Sola Ogunbanwo, “The Treaty of Pelindaba: Africa is nuclear-weapon-free,” *Security Dialogue*, Vol.27, No.2, 1996, p. 185.

94) *The Arms Control Reporter*, p. 459.A.7.

95) 영토개념에 입각하여 적용대상지역을 조약당사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국한하였다.

96) 라로통가조약과 똑같이 정의되었다.

서 제출, 자료의 교환, 협의, 이의제기, 분쟁해결절차 등 추가적인 검증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분쟁발생시 아프리카원자력위원회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IAEA에 사찰을 요청할 수 있다. 아프리카단결기구가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할 수도 있다.

세 가지의 부속의정서가 있다. 제 I 의정서는 5개 핵국이 비핵지대를 존중하며 조약가맹국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험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이 모두 서명하였고 프랑스와 중국은 비준도 하였다. 비핵지대내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제 II 의정서에도 미·영·불·중·러가 모두 서명하였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비준도 하였다. 제 III 의정서에는 비핵지대내에 영토를 보유한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 해당영토에 대한 비핵지대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만 서명·비준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주요 비핵지대 조약과 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을 <도표 2>로 정리하여 본 장의 마지막에 제시하였다.

#### 마. 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

한반도나 동북아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 소련, 일본 사회당 등이 정책선언이나 지도자의 연설 형태로 산발적인 제안을 하였다.<sup>97)</sup> 하지만 이러한 제안

97) 구체적으로, 1959년 흐루시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동북아비핵지대화 제안, 1976년 8월 동경에서 개최된 한국문제긴급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제안, 1981년 3월 평양을 방문한 일본사회당이 북한과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와 일본근해에서의 비핵지대설치안을 들 수 있다. 한편, 1986년 고르바초프대통령도 아시아태평양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제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호재, “한반도 핵논쟁과 비핵지대안,” 이호재 편, 『韓半島軍縮論』, (서울: 법문사, 1989), p. 302.

들은 냉전체제하에서 현실성과 구체성이 결여된 정치적 선전의 성격이 짙었다.<sup>98)</sup>

이와 달리 비핵지대의 범위와 성격 및 실현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도 민간차원(Track II)에서 제안되었다.<sup>99)</sup> 첫째, 1972년 화이팅(Allan Whiting)은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을 저지할 목적으로 동경을 중심으로 반경 2,400km 이내에 존재하는 미국핵무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커닝햄(William Cunningham)도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1975년 미·소·중 3개국이나 혹은 남북한·미·소·중·일 6개국이 합의하여 한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할 것을 제의하였다. 셋째, 헬퍼린(Morton Halperin)은 1975 남북한이 상호무력불사용에 합의한 뒤 한반도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하고 미·소·중·일이 이 조약을 존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에다 하야시는 1966년과 1979년 각각 남북한이 핵·화학·세균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한반도 평화지대를 설치하는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은 비핵3원칙을 준수하며 유엔이 이를 보장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전의 제안들이 일시적이고 산발적이었던 것에 비해, 1990년대 들어서는 비핵지대문제가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 조지아공과대학의 엔디콧(John Endicott) 교수가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동북아제한비핵지대」(Limited Nuclear Weapon Free Zone in Northeast Asia: LNWFZ-NEA)안이다.<sup>100)</sup>

98) John Endicott, "The Impact of a limited nuclear free zone on deployed nuclear weapons in Northeast Asia," prepared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managed by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July 1994, p. 1.

99) 이호재, "한반도 핵전쟁과 비핵지대안," pp. 298~301.

100) *Background Data: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2nd Meeting of the Expanded Senior Seminar, October 10~14,

LNWFZ-NEA 개념은 1991년 가을 미·소의 전술핵철수 선언이 계기가 되어<sup>101)</sup> 그 해 11월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2월 24일 워싱턴의 고위정책검토위원회인 「머더위원회」(Murder Board)에서 처음 제안이 소개된 데 이어, 같은 해 3월 북경회의에서 캐나다,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몽고,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소개되었다. 1995년 1월에는 한·미·일·중·러의 퇴역장군들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검토를 개시하였다. 1996년 3월에는 고위급위원회를 확대하여 한·미·일·중·러 5개국의 전문가 20여명이<sup>102)</sup>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의를 갖고 LNWFZ-NE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에노스아이레스성명을 발표하였다.<sup>103)</sup>

---

1996, Bordeaux, France.

- 101) LNWFZ-NEA 개념의 태동계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미국은 국방부의 「동아시아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감축(주필리핀 미군의 감축 및 주일·주한미군의 감축가능성 언급)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1991년 전술핵철수선언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물러설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없애고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계속 적극적인 세력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협력안보의 틀을 만들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 LNWFZ-NEA 개념이었다. 즉 미국의 개입을 유지하되 대결에 기초한 기존의 안보체제를 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안보체제로 전환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단으로 LNWFZ-NEA가 채택된 것이었다. John Endicott, "Existing criteria for Nuclear Weapons-Free Zones and the Limited Nuclear Weapons-Free Zone concept for Northeast Asia," *A Report by the Chairman of the Interim Secretariat Regarding Efforts to Create a Cooperative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at Hakone Japan in October 1999, p. 5.
- 102) 「부에노스아이레스그룹」(The Buenos Aires Group)이라고 칭한다.
- 103) "The Statement of Buenos Aires," Final Statement of the Buenos Aires Group: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Buenos Aires Group Regarding a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LNWFZ) for Northeast Asia. *The Bordeaux Protocol of the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rch 1997, pp. 79~81.

- LNWFZ-NEA는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체제구축에 중요한 일보가 될 수 있다.
- LNWFZ-NEA은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적대적이지 않다.
- 비핵지대의 지리적 범위는 추후 검토되어야겠지만 중국, 일본, 남북한, 러시아 및 미국을 포함한다.
- 역내에 배치된 핵무기의 제거 혹은 이전은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 장거리전략무기에 사용되지 않은 핵무기에 중점을 둔다.
-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 TMD)와 같은 방어체계가 LNWFZ-NE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 LNWFZ-NEA는 원자력발전과 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제하지 않지만 안전조치는 계속 실시한다.
- LNWFZ-NEA 본부의 후보지로 히로시마, 블라디보스토크, 한반도, 울란바토르 등 몇 곳이 거론되었다.
- 조약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검증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검증기술의 공동개발과 공유가 도움이 될 것이다.
- 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탈퇴시에는 6개월 이전에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
- 회원국은 역내의 희망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미·러·중·일·한국을 창립회원국으로 하며, 역내 기타 국가는 물론 모든 핵국의 가입을 권고한다.
- LNWFZ-NEA은 최종목표가 아니며 범세계적으로 중요한 핵군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확대고위급위원회회의가 1996년 10월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5개국의 민간대표 29명과 10여명의 프랑스전문가 및 6명의 정부관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보르도회의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성명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실천의제”(Action Agenda)에 합의하였다.<sup>104)</sup>

- 각국 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①LNWFZ-NEA의 크기와 형태,<sup>105)</sup> ②포함될 구체적인 무기체계, ③검증체계, ④담당기구의 구성, ⑤보완적인 신뢰구축 방안
- 각국 대표간의 공식적인 연락창구개설
- 무기감축비율을 결정하는 상호주의개념에 대한 연구
- 역내국가는 아니지만 핵국인 영·불에 참관국자격 부여
- 협력안보체제의 개념채택

이후 모스크바, 헬싱키, 상하이를 거쳐 1999년 10월 일본의 하꼬네에서도 후속 고위급위원회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LNWFZ-NEA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논의

104) *The Bordeaux Protocol of the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rch 1997, p. 23.

105) 현재까지 한반도의 DMZ를 중심으로 반경 1,200km의 원형, 러시아 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알래스카와 대만을 포함하는 타원형 등 두 가지가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Ibid., pp. 61~63. 제한비핵지대의 “제한”은 무기체계와 지역 두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수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핵무기를 제외한 전술핵무기만을 다루고 있다. 둘째, 대상지역을 중·소의 전략핵무기 배치·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면서 미국의 영토를 부분적으로 포함시켰다.

가 시작된 것도 물론 아니다. LNWFZ-NEA에 대한 논의가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주된 이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LNWFZ-NEA 개념이 핵비확산체제상의 신분이 다른 핵국과 비핵국의 활동을 함께 규제하려는 데서 오는 의무의 불균형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핵국을 포함시킴으로써 핵무기의 폐기와 재배치라는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셋째, 동북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가국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역내국가들간에 쌓여진 불신과 적대감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LNWFZ-NEA 제안이 갖는 이와 같은 한계는 동북아시아의 현재 여건상 LNWFZ-NEA가 아직 시기상조이며 중간단계의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먼저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바. 기타

### (1) 뉴질랜드의 일국비핵지대선언

1987년 뉴질랜드의회는 뉴질랜드를 비핵지대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의 영토, 내수, 영해와 영공에서 핵폭발장치의 획득, 배치 및 실험이 금지되었다. 또한 수상이 외국함선·항공기가 핵폭발장치를 탑재하지 않았다고 확인할 경우에만 영해진입과 기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자력추진 함선의 내수진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비핵지대조약에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는 사항들이다. 미국은 뉴질랜드의 강력한 비핵지대정책이 호주와의 3국(Australia-New Zealand-U.S.: ANZUS) 동맹을 위협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간 해상연합훈련과 정보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2) 몽고의 일국비핵지대선언

1992년 9월 25일 몽고대통령은 제47차 유엔총회연설에서 안전보장 확보차원에서 자국영토를 비핵지대로 만든다고 선언하고 몽고비핵지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을 희망하였다. 1998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몽고의 비핵지대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sup>106)</sup>

## (3) 중동비핵지대(안)

1974년 이란과 이집트가 중동을 비핵지대로 만들 것을 제의한 이래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유엔도 총회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다수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걸프전 종전과정에서 채택된 안보리결의안 687호에서도 중동의 비핵지대화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이 지역의 핵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 핵무기를 들여오는 최초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하에 핵보유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sup>107)</sup> 1990년 4월 이집트의 무바라크대통령은 중동을 핵무기 뿐아니라 세균·화학무기도 금지하는 비대량살상무기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들은 현재 진행중인 평화정착과정이 완성되어 무력행사위협이 사라지기 전까지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sup>108)</sup>

106) Jargalsaikhany Enkhsaikhan, “Mongolia’s single-state nuclear-weapon-free zone,” *Disarmament Times*, December 1998.

107) Leonard Spector, *Nuclear Ambitions*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p. 149~174.

108) Jozef Goldblat, “Nuclear-weapon-free zones: a history and assessment,” p. 29.

(4) 중앙아시아비핵지대(안)

중앙아시아의 5개국 정상들은 1997년 2월 카자스탄의 알마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든다는 데 동의하였다. 5개국 관리들은 같은 해 7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재2차 회의를 갖고 핵무장선택권을 포기하고 비핵지대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도표 2> 세계의 비핵지대 관련 조약들<sup>109)</sup>

항목		조약	틀렛틀코조약 (중남미비핵 지대조약)	라로통가조약 (남태평양비핵 지대조약)	방콕조약 (동남아비핵 지대조약)	팰린다바조약 (아프리카비핵 지대조약)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일반 사항	서명		67. 2. 14	85. 8. 6	95. 12. 15	96. 4. 11	91. 12. 31
	발효		68. 4. 25	86. 12. 11	97. 3. 28		92. 2. 19
	당사국		33	13	10	49	남북한
	유효기한		무기한	무기한	무기한	무기한	
	탈퇴조항		3개월전 통보	12개월전 통보	12개월전 통보	12개월전 통보	
적용지역			영토·영해· 영공 및 주권 행사 지역 (외각경계선 개념)	내수·영해·다도 해역·해저와 하층토·영토· 영공 (외각경계선 개념)	영토·내수· 영해·다도해역 ·해저와 하층토·영공· 대륙붕·EEZ (영토 개념)	영토·내수· 영해·다도해역 ·해저와 하층토·영공 (영토 개념)	남북한 (영토 개념)
규제대상			핵무기	핵폭발장치 (부분조립품)	핵무기	핵폭발장치 (부분조립품)	
금 지 활 동	연구(research)					√	
	개발(development)				√	√	
	실험(testing)		√ 평화적 핵실험 허용	√	√	√	√
	제조(manufacture)		√	√	√	√	√
	생산(production)		√				√
	획득(acquisition)		√	√	√	√	
	접수(receipt)		√				√
	배치(stationing)			√	√	√	
	배비(deployment)		√	√	√	√	√
	저장(storage)		√	√	√	√	√
	비축(stockpiling)			√	√	√	
	설치(installation)		√	√	√	√	
	장착(emplacement)			√	√	√	
	부착(emplantation)			√	√	√	
	수송(transportation)			√	√	√	
	소유(possession)		√	√	√	√	√
	통제권(control)		√	√	√	√	
	사용(use)		√		√		√
	핵폐기물 해상·육상 폐기(dumping)			√	√	√	
재처리·농축시설 보유						√	

109) <도표 2>는 다음 논문의 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고한석, “세계 비핵지대 조약의 현황과 전망,” 「원자력산업」, 1998년 2월호, pp. 77~78.

<도표 2> 세계의 비핵지대 관련 조약들 (계속)

조약 항목	틀렛틀코조약 (중남미비핵지대 조약)	라르몽가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 조약)	발콕조약 (동남아비핵지대 조약)	펠린다바조약 (아프리카비핵지대 조약)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기 타 의 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 관련 안전평가를 가맹국에게 통보 ·원자력사고의 조기 통보협약에 가입	·핵무기 제조능력 공표과 이미 개발한 핵무기 및 제조시설 폐기 ·원자력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	NPT 제Ⅲ조 2항 이행 재확인	NPT 제Ⅲ조 2항 이행 재확인	√	√
항공기, 함선 통과(항)	당사국의 특권 사항으로 해석	·공해자유원칙준중 ·무해통과·통항준중 ·당사국이 결정	·공해자유원칙 준중 ·무해통과·통항 준중 ·당사국이 결정	·공해자유원칙 준중 ·무해통과·통항준중 ·당사국이 결정	
기착(항) 허용 여부	"	"	"	"	
검증제도	·IAEA 전면안전 조치협정 체결 ·의무위반시 총회 소집 및 IAEA와 유엔에 통보 ·OPANAL과 IAEA간 협력 (IAEA가 특별사찰 실시)	·IAEA 전면안전 조치협정 체결 ·이행기구로 자문 위원회를 두고 특별사찰 실시 ·핵국에 수출시 IAEA의 재한 안전조치 요구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이행기구로 동남아 비핵지대위원회와 진행위원회 설치 ·IAEA가 특별사찰 실시 ·부속의정서 서명국의 위반시 대응책 마련하도록 규정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NPT Ⅲ조 2항 이행 재확인 ·아프리카원자력 위원회 설치 ·당사국회의를 2년에 한번씩 개최 ·IAEA가 특별사찰 실시	·남북핵동계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한 상호사찰
유보금지	√	√	√ 의정서는 유보가능	√	
분쟁해결	·평화적 해결원칙 미해결시 ICJ에 제소	·자문위원회에서 해결 ·남태평양포럼 개최	·평화적 해결원칙 미해결시 ICJ에 제소	·아프리카원자력 위원회에서 해결 ·IAEA에 사찰요청 (필요시) ·OAU가 유엔안보리에 상정	
부속의정서	·핵국의 NSA (제Ⅱ의정서) 미·영·불·중·러 서명·비준	(제Ⅱ의정서) 영·불·중·러 서명·비준, 미국 서명만	·단일의정서 형식 5개 핵국이 비핵지대지위를 준중하고 NSA를 제공하도록 요구 (서명국 없음)	(제Ⅰ의정서) 미·영·러 서명, 불·중 서명·비준	
	·핵실험 금지 (제Ⅰ의정서상 의무에 구속)	(제Ⅲ의정서) 영·불·중·러 서명·비준, 미국 서명만		(제Ⅱ의정서) 미·영·러 서명, 불·중 서명·비준	
	·역내 영토 보유국의 의무 수락 (제Ⅰ의정서) 미·영·불·네덜란드 서명·비준	(제Ⅰ의정서) 영·불 서명·비준, 미국 서명만		(제Ⅲ의정서) 불 서명·비준, 영국·스페인 미서명	

# 원문누락

# 원문누락

(2) 러시아

냉전당시 소련은 비핵지대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다음 두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sup>113)</sup>

1. 다른 핵국들이 비핵지대의 지위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지 여부
2. 조약가맹국들이 수용한 의무의 완전성과 그들이 비핵상태를 보장하는 정도

한편 고르바초프대통령 당시 고르바초프의 측근이며 대통령평의회 위원이었던 메드베데프(Vadim Medvedev)는 지난 1990년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제의하며 소련이 다른 핵국과 함께 보증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sup>114)</sup>

현재 러시아의 입장은 비핵지대의 창설을 지지하고 조약당사국들에 대해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이다. 이는 해당 비핵지대조약이 핵국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선별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3)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도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입장이지만 다음과 같이 12항목으로 세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sup>115)</sup>

---

113) Tariq Rauf, *Nuclear-Weapon-Free Zones(NWFZs): Questions & Answers,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Charts & Matrices* (Monterey: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1997), p. 8.

114) *The Korea Times*, November 23, 1990. 그러나 보증인이 취할 조치나 의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115) Tariq Rauf, "Consideration of Mongolia's nuclear-weapon-free status," pp. 8~9.

1. 비핵지대는 해당지역의 관련 당사국들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2. 해당지역내의 국가들이 비핵지대창설의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
3. 비핵지대는 일관성있고 분명한 지리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5. 비핵지대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6. 비핵지대가 기존의 지역적 혹은 국제적 안보협정, 유엔헌장에 보장된 개별방어 혹은 집단방어의 고유권리 및 지역적 혹은 국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7. 비핵지대는 조약당사국이 여하한 목적으로 어떠한 핵폭발장치를 개발·보유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하며, 이들이 자국영토에 핵폭발장치의 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비핵지대조약은 핵비확산과 핵군축에 관한 기존의 국제조약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9. 비핵지대조약은 국제법 및 핵국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들과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10. 조약당사국들의 의무가 분명히 정의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11. 비핵지대조약은 해당지역내 모든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시설에 대해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조약당사국의 의무이행을 효과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12. 비핵지대조약은 국제법 특히 공해자유와 무해통과·통항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 (4) 중국

핵국으로서는 유일하게 무조건적 핵불사용약속과 대폭적인 핵군축 실현 등 핵국의 권리를 제한하고 비핵국과의 차별성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견지해 온 중국은 다른 4개핵국에 비해 비핵지대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핵국의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6)</sup>

1. 비핵지대는 해당지역의 관련 당사국들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하고 해당지역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창설되어야 한다.
2. 비핵지대에 IAEA의 안전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검증시스템이 설치되어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3. 비핵지대의 지리적 경계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 지역의 경계선은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고 조약당사국들과 이웃 국가들간에 영토주권과 해양에서의 권한 및 이익에 분쟁이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4. 조약의 조항들은 국제법의 원칙에 일치해야 하며 공해자유와 무해통과·통항의 권한에 제약을 가해서는 안된다.
5. 조약의 조항들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비핵지대 역외국가의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6. 비핵지대 역내국가는 비핵지대조약의 모든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군사동맹의 일원이라는 등 어떠한 변명을 통해서도 조약의 의무이행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7. 조약은 조약당사국들의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비핵지대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

---

116) Ibid., pp. 9~10.

에 이바지해야 한다.

8. 핵국은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과 비핵지대조약의 관련 의정서에 서명·비준하겠다는 것을 무조건 공약해야 한다.
9. 핵국은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0. 핵국은 비핵지대 역내국가가 핵공격을 받는 경우, 이를 즉각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여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에 따라 피공격국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공격국에 대한 엄격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엔안보리에서 행동해야 한다.

#### 나. 남북한과 일본의 입장

##### (1) 북한의 입장

비핵지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초안)과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제기한 이행합의서(초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간의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면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핵무기개발금지 관련: 핵무기의 구입·실험·생산·반입·보유·사용·저장·배치·배비금지, 핵무기생산을 전제로 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수입금지
2. 한미합동군사훈련 관련: 핵무기가 동원되거나 핵무기사용을 가상의 군사훈련·작전의 참가·허용 금지, 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지
3. 대북핵위협해소 관련: 핵위협금지, 핵불사용 문서보장,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4. 핵우산제공 관련: 핵우산보장조약 체결금지, 핵무기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 체결금지
5. NCND정책 관련: 핵무기탑재 가능한 항공기·함선의 영토 진입·출입·통과·방문 금지, 주한미군기지 사찰
6. 국제적 보장 관련: 핵국들이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

북한의 비핵지대입장은 기존의 비핵지대조약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기존 조약들과 달리 규제사항이 훨씬 포괄적이다. 핵무기의 실험·생산·반입·보유·사용·저장·배치·배비 금지 등 일반적인 비핵원칙과 더불어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와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기존의 비핵지대조약은 각국의 공해자유와 무해통과·통항의 권리를 존중하고 핵무기탑재 항공기와 함선의 통과·방문 허용 문제를 조약당사국에 일임하고 있으며 기간과 회수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다. 오직 뉴질랜드만이 국내법으로 핵무장·핵추진 함정이 자국 영해에 들어오거나 핵무기탑재 항공기가 영토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핵무기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국보다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해상으로 들여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비핵지대제안은 핵우산보장조약 체결금지, 핵무기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 체결금지, 핵무기가 동원되거나 핵무기사용을 가정한 군사훈련금지,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및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의 안보공약

을 훼손하고 한미안보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요구사항임에 틀림없다. 즉 북한의 주장은 주한미군을 핵비무장화시키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까지도 겨냥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북한은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지위를 핵국들로부터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보장요구는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관례에 부합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법적 보장을 함께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지대주장이 겨냥하고 있는 주된 관심사항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사력의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한반도에서 미군의 핵전력이 야기하는 위협에<sup>117)</sup> 대한 우려가 북한의 비핵지대주장의 큰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북한의 동기와 전략적 의도를 감안할 때, 북한은 3국비핵지대가 주한미군 뿐아니라 주일미군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및 한국과 대등하게 협상에 참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할 경우, 조약체결 자체가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117)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보유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협상과정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협상 당시 북한은 핵무기의 “반입” 금지를 집요하게 주장하였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반입”대신 “철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 (2) 한국의 입장

한국은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과 주한미군전술핵 철수 이후 적극적인 핵비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지대창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118)</sup> 비핵지대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다 구체적 입장은 1999년 4월 UNDC회의에서 행한 한국대표의 연설에 잘 나타나있다.<sup>119)</sup> 조창범대표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이행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 선언의 조기이행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 뿐아니라 지구적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비핵지대는 역내국가들의 자유로운 합의와 해당지역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모두 고려한 바탕위에서 설립되어야 하며, 공해자유의 원칙과 유엔헌장에 명시된 개별적 혹은 집단적 방위의 고유권한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약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검증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비핵지대창설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더불어 북한을 끌어들이고 일본을 활용한다는 3국비핵지대의 기본정신은 한국이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즉 3국비핵지대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장조치가 될 수 있고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한국으로 하여금 3국비핵지대 창설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북한의 참여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118) 외교통상부군축원자력과 문덕호서기관과의 인터뷰, 1999년 11월 24일.

119) *Statement by Ambassador Chang-beum Cho,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t the 1999 Substantive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April 13, 1999.*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의 양보가 필요한 경우 양보의 규모가 한국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비핵화공동선언이 이미 존재하는 데 일본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 왜 한국만 핵무장옵션을 포기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국내여론도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이 주장해 온 “비핵지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한국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로서 미국과의 정치적, 전략적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3국비핵지대가 창설될 경우 기존의 미국 핵우산보장 뿐아니라 핵국들로부터의 핵공격금지 약속 등 한반도를 핵공격의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보장대책을 강구할 가능성도 있다.

### (3) 일본의 입장

일본전문가들은 비핵지대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일본내에서 비핵지대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적은 없다.<sup>120)</sup> 외무성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해대학 교수로 있는 카네코 쿠마오(金子熊夫)가 판문점을 중심으로 2,000km에 달하는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자고 제의하고 있지만,<sup>121)</sup> 비핵지대가 당면한 현안으로 진지하게

120) 동경대학 원자력에너지사회공학과 스즈키 타쥬지로(鈴木達治郎) 교수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1일.

121) Kumao Kaneko, “Japan needs no umbrella,”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April 1996, pp. 46~51. 남북한,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몽고 및 미국이 참여하며 핵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 소유, “수입”(import), “반입”(introduction) 등을 금지한다. 비핵지대에 대한 핵국의 의무사항으로 다음과 세가지 의정서를 제의하고 있다: ①비핵지대 조약당사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②비핵지대내에서의 핵선제불사용, ③10년 내에 역내에서 모든 핵무기의 폐기 혹은 철수. *Outline of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by Kumao Kaneko, October 1999.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정부도 비핵지대가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sup>122)</sup> 따라서 비핵지대에 대한 일본의 기본정서는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핵비확산 차원에서 긍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정립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일본은 비핵지대의 득실을 세밀하게 저울질할 것이다.

비핵지대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유추하기 위해서 엔디콧교수가 주도하는 LNWFZ-NEA 관련 회의에서 드러난 일본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대표의 논지는 비핵지대의 창설논리에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억지력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르도회의에서 일본대표단은 미국의 핵우산보장이 없이는 LNWFZ-NEA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sup>123)</sup> 이러한 입장표명은 비핵지대문제가 제기될 경우 일본정부는 미국의 반응에 민감할 것이고 비핵지대가 미국의 핵억지력에 배치되지 않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sup>124)</sup> 한국과 같이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이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3국비핵지대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진지한 검토의 가치가 있는 정책방안이지만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과의 안보동맹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일본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 일미군사동맹과 미국의 핵억지력의

122) 일본 동경제단 메카타 모토코(目加田 説子) 연구위원과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2일.

123) 최상진, 「비핵지대의 확산과 '동북아 제한비핵지대' 설치안」, p. 46.

124) 일본 동경제단 메카타 모토코(目加田 説子) 연구위원과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2일.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본의 기본원칙으로 보인다. 핵군축외교를 중요시하면서 핵무기전폐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현실적으로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안보상의 필요요건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기본원칙의 바탕이 되고 있다.<sup>125)</sup> 따라서 일본의 비핵지대화는 핵군축을 지지하는 일본의 외교적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의 핵억지력을 더욱 필요로 하게 만드는 일견 모순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여론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상존하는 데 3국비핵지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으며, 일본의 핵무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3국비핵지대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세균·화학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비핵지대창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126)</sup>

결국 3국비핵지대가 일미간의 안보동맹을 저해하지 않고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된다면, 일본은 3국비핵지대개념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특히 3국비핵지대가 남북한의 핵무장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일본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핵우산과 관련하여, 미국을 포함한 5개 핵국들로부터의 포괄적인 안전보장대책이 강구된다면 한국 뿐아니라 일본도 3국비핵지대창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새로운 안전보장장치로 대체하자는 것이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이미 카네코교수는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는 대신에 비핵

125) 동경대학 원자력에너지사회공학과 스즈끼 타쥬지로(鈴木達治郎) 교수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1일.

126) 아사히신문 기자인 요시다 후미히코(吉田文彦)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2일.

지대를 만들고 핵국들이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금지하는 의정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안보를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27)</sup>

## 2. 3국비핵지대창설의 타당성과 효과

3국비핵지대의 창설은 다음과 같은 타당성과 효과를 갖는다.

### 가. 북한의 핵개발기도 차단

3국비핵지대는 북한의 핵개발기도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장장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 체결된 제네바기본합의문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북한군부와의 대화에 근거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미사일개발을 계속 추진하면서 핵분야에서도 최소한 실험실수준의 연구는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128)</sup> 또한 미의회의 대북한정책검토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은 1994년 이후 핵개발을 위해 파키스탄, 러시아 등으로부터 외부의 지원을 모색해왔고 유럽과 일본에서 이중용도품목의 획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sup>129)</sup> 더욱이 우리나라농축기술과 핵관련 고폭실험을 포함하여 핵무

127) Kumao Kaneko, "Japan needs no umbrella," p. 50.

128) *The DPRK Report No. 20*,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and the Center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Problems, September–October 1999, p. 2. (<http://www.nautilus.org/NPASNet> 참조).

129) 러시아와 동구권으로부터 핵물질, 핵기술, 핵무기 및 관련 전문가들의 북한유입가능성에 대한 경고와 대책마련의 시급성은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한 예로서,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기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significant evidence)가 있다고 명시하였다.<sup>130)</sup> 제네바기본합의문을 통해 영변과 태천 지역의 핵개발은 중단되었지만 북한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견제장치는 세가지가 존재하지만 모두 기대만큼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IAEA와 체결한 전면안전조치협정의 경우, 북한이 NPT 탈퇴선언을 유보한 특수지위임을 주장하면서 최소한 KEDO가 지원하는 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제공되기 전까지 IAEA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곳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포함하여 과거 핵활동에 대한 의혹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 둘째, 제네바기본합의문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영변과 태천 등 이미 알려진 장소와 시설에서의 핵개발활동만을 중단시켰을 뿐이며 다른 지역에서의 핵개발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은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한과 일본이 참여하는 3국비핵지대는 기존의 핵개발 견제장치에 추가하여 북한의 핵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IAEA의 사찰 수준을 능가하는 효과적인 검증체제를 3국간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35~136 참조.

130)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999, p. 2. 이 그룹은 1999년 8월 미하원의장이 지난 5년간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안보위협이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만들어졌다. 뉴욕주출신 공화당 하원의원인 길만(Benjamin Gilman)을 포함하여 총 9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유명무실화된 비핵화공동선언의 발전적 개편

남북한은 우여곡절 끝에 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고 핵사찰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협상은 1993년 1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지금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제네바기본합의문에 기초하여 북한핵문제가 다루어져 왔다. 북한은 김대중정부의 온건한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당국간 대화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논의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제네바기본합의문(제3조 2항)에서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의 준수입장을 원칙적으로 표명하였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 협상과정에서부터 한국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제네바기본합의문과 비핵화공동선언은 그 이행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두 문서의 조화로운 병행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다. 아울러 기본합의문은 북한의 재처리시설 해체를 향후 10여년이 소요되는 경수로사업의 종료단계까지 연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제3항)의 위반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재처리시설은 현장에서 상주감시하는 것이 국제관례이지만 남북한 상호사찰 차원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비핵화공동선언이 사실상 무실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31)</sup> 비핵화공동선언을 현재와 같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

131) 미행정부는 제네바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 비핵화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비핵화공동선언을 둘러싼 갈등이 기본합의문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놔두는 것은 남북한이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비핵화공동선언의 존재를 무효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제사회가 남북한의 태도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서, 미의회는 1999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KEDO에 대한 지원의 조건으로 미대통령으로 하여금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했음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sup>132)</sup> 따라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응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은 비핵화공동선언의 발전적 개편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준과 동시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일본의 지위와 기술력 활용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은 원자력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는 일본을 활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대외적으로 원자력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혹

132) 구체적으로, 1999년 6월 1일 이후 집행될 2천만불의 KEDO 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미대통령은 해당일 30일 전까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미국이 북한과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를 시작함, ②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함, ③북한의 미사일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북미간 협상에 중요한 진전을 이룩함. *Excerpt from the House-Senate Conference Report for HR 4328 (Omnibus Appropriations Bill)*, October 28, 1998. 지금까지 두번째와 세번째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해소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를 해외에서 재처리하여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일본국내에 비축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정부는 자국의 핵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IAEA 사찰보다 강도높은 사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IAEA의 굳은 신뢰를 받게 되었다. 또한 핵비확산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제무대에서 건설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등 핵비확산외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대내적으로 자국 국민들에 대해 원자력이용정책의 필요성과 핵무기보유의 부당성을 교육시키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소위 “평화교육”이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의 원폭피해지 방문을 실시하는 등 국민들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일본에 반핵무기 여론이 탄탄하게 조성된 데는 물론 일본이 세계최초의 원폭피해국이라는 사실이 초래한 핵무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체계적인 국민교육을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 플루토늄 해상수송문제 그리고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방위청 정무차관의 핵무장발언<sup>133)</sup> 등으로 일본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판과 의혹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자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반핵무기 여론이 확고하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핵비확산정책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비핵지대창설은 한국에 대한 핵의혹을 해소함과 동시에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133) 「동아일보」, 1999년 10월 20일. 한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외상은 일본정부의 비핵3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즉각 반박하였다. 니시무라는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바로 사퇴하였다.

의 신뢰도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여건에 처해 있는 일본은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지난 수십년간 원자력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일본의 원자력기술개발경험은 비슷한 길을 가야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원자력기술협력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상업적 경쟁의식이 큰 요인이지만,<sup>134)</sup> 한국의 핵무장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3국비핵지대창설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본과의 원자력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본의 선진원자력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라.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혹 해소

3국비핵지대창설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핵의혹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이 핵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는 핵의혹이 야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핵의혹은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야기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원자력은 현재에도 전력수요의 절반 정도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지속될 전망

134) 일본은 한국을 원자력산업의 주요 경쟁대상국으로 간주하고 한국과의 원자력협력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이광석박사와의 의견 교환, 1999년 12월 6일.

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에너지안보차원에서 핵심적인 국가전략의 일부이다. 평화적인 원자력이용은 전력 발전 뿐만 아니라 비에너지분야에서도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방사선치료기술, 생산공정의 불량품 검사 등에 사용되는 비파괴기술, 농작물 품종개량, 생명공학, 방사능을 이용한 오염원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의 기초기술이 응용될 수 있다. 군사적 분야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국들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인공위성에 장착하는 플루토늄배터리 제조기술과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원자로가 그 예이다.<sup>135)</sup>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유형·무형의 국제적 제약과 견제가 많을수록 과학, 기술,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용을 활성화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핵의혹 해소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핵의혹은 외교, 정치, 국방 등 한국의 다양한 국가정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여하는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외교역량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즉 한국에 대한 핵의혹은 한국이 핵비확산이라는 지고의 국제규범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는 의심에 다르다. 이로 인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있는 일원으로 인정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야기된다. 이는 다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여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핵의혹 해소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에 대한 핵무장의혹은 필연적으로 주변국들의 경계와 견

135) 원자력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신성택, "Nuclear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국제화시대 과학기술의 국제역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1999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주최 국제학술회의, 1999년 11월 19일 참조.

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는 동북아 역내국가들간의 정치, 외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우리정부가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넷째,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은 북한의 핵개발의혹과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통일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할 수 있다. 만약 국제사회가 이러한 의심을 갖게 되면,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이 통일과정에서 통일성취의 역량을 건설하게 키워나가기 위해 정치, 경제, 안보적 제측면에서 주변국들로 받아야 할 지지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서독이 통일되기 전 통일독일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세균·화학무기 등 일체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마. 3국의 원자력정책에 법적 구속력 부여

3국비핵지대는 남북한과 일본이 서로의 원자력정책에 대해 품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3국의 핵비확산정책은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남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은 서명만 되었을 뿐, 실천되지 못하고 있고 남한의 경우 국회비준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은 1990년대 초 남북한 양측 정권이 합의한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므로 양쪽 모두에서 정권이 바뀐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sup>136)</sup>

136) 독일 베를린대학교 서병문교수와의 의견교환, 1999년 7월 13일.

한편 일본이 견지하고 있는 비핵3원칙<sup>137)</sup> 역시 정책적 차원의 선언에 불과할 뿐이고,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이다. 일본정부가 언제라도 원칙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자유롭게 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비핵3원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는 일본정부가 표명하는 비핵의지의 신뢰성을 약화시켜왔다. 이 때문에 일본의 비핵3원칙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sup>138)</sup>

3국비핵지대는 남북한과 일본을 비핵지대로 만드는 국제조약이므로 기존의 선언과 원칙이 안고 있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국이 제각기 표명한 핵비확산의지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동시에 부여하는 국제조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3국간에 서로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뿐아니라 3국의 핵비확산의지를 과시하고 원자력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믿음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137) 1967년 사토(佐藤)수상은 중의원에산위원회에서 사회당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핵무기의 “보유”(保有), “제조”(製造) 및 “반입”(持ち込む)을 금지하는 비핵3원칙을 선언하였다. 佐々木芳隆, “核戦略の中の日本” 「核と人間: 核と対決する20世紀」, (東京: 岩波書店, 1999), p. 244. 사또수상은 1968년 1월 중의원본회의 대표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핵정책의 4대원칙(核政策四本柱)도 밝혔다: ①비핵3원칙 견지, ②미일안보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 ③NPT의 조기체결과 핵군축 추진, ④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Ibid., p. 245. 비핵3원칙은 1971년 2월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축소에 관한 내용과 함께 국회결의로 통과되었다. Ibid., 246.

138) 카네코 쿠마오(金子熊夫)는 일본사람들이 비핵3원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자신은 이러한 방법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3원칙을 국내법으로 만들어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수정과 변경이 가능할 뿐아니라 현재의 상태와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법으로 만들기보다는 국제조약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카네코교수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2일.

## 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조치

3국비핵지대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상의 주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움직임은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김대중정부도 남북한관계와의 “조화와 병행”을 요구하던 과거정권과 달리 조건없는 북미, 북일수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미간에는 고위급회담 뿐 아니라 미사일, 유해송환, 핵문제 등 현안 별로 다양한 실무회담이 진행중에 있고, 북일간에도 외교당국자간에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회담이 열리고 있다. 3국비핵지대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교차승인구도의 완성을 통해 안정된 평화체제의 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의 노력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정책대안이다.

아울러 3국비핵지대는 남북한과 일본의 핵무기개발 포기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약속으로서 지역안보증진차원에서 중요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이다. 3국은 비핵지대를 통해 서로간의 원자력정책 뿐 아니라 군사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국비핵지대는 또한 남북한과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와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기능도 하게 될 것이다.

## 사. 국제적 핵비확산 노력에 기여

3국비핵지대의 창설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차원에서 국제적인 핵비확산 노력에 기여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첫째, 남북한과 일본 및 관련 부속의정서에 서명하는 핵국들이 NPT 제VI조와 제VII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둘째, 북한과

같이 NPT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를 포함시킴으로써 NPT 체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거둔다. 셋째, 북한에 비해 핵개발가능성은 적지만 잠재적인 핵능력을 보유한 남한과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을 차단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넷째, 지역차원의 검증체제를 새롭게 갖추으로써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보완하고 핵활동의 투명성제고에 기여한다. 다섯째, 핵국으로부터 핵공격 및 공격위협 금지약속을 보다 분명히 받아냄으로써 비핵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이들이 핵비확산체제에 잔류할 동기를 높여준다. 여섯째, 관련국들이 핵무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세균·화학무기 등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차원의 안보증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추세에 부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 세기간 지속되어 온 동서대결구도가 와해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던 봉쇄와 대결의 안보개념도 변화하게 되었다.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다자간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이다. 협력안보는 군비경쟁과 갈등의 유발보다는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지역별로 적절한 국제규범을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군비경쟁을 차단하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공존의 길을 모색한다는 안보개념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자간의 안보협력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냉전종식에 크게 기여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를 1994년 확대개편한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유럽의 평

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태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와 같은 비정부차원의 안보협력대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보다 적은 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지역안보협력체를 창설하자는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sup>139)</sup>

3국비핵지대는 이와 같이 지역적, 범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다자간의 협력안보추세에도 부합하는 시기적절한 방안이다. 역내에서 핵무기개발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3국이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것은 규범과 제도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협력안보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조치인 것이다. 3국비핵지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들을 포함시키고 관심의제를 넓힘으로써 점진적으로 협력안보의 실현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39) 예를 들어, 일본수상을 지낸 나카소네는 아시아에서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중앙일보」, 1992년 9월 22일. 한국의 한승주 전외무장관은 장관시절인 1993년 5월 31일 한국외교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와 신뢰증진을 위해 「Mini-CSCE」형식의 안보협력체제를 제의한 바 있다. 김대중대통령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안보협력기구를 결성할 것을 주창해왔다. 「중앙일보」, 1998년 10월 22일; *The Korea Herald*, November 11, 1999.

## VI.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

### 1. 조약의 주요 조항

3국비핵지대(Korea-Japan Nuclear-Weapon-Free Zone: KJNWFZ)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을 갖추도록 한다.

#### 가. 규제대상

규제대상은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추세를 감안하여, “핵폭발장치”(nuclear explosive device)로 규정하고 핵폭발장치는 “군사적 및 평화적 목적을 갖고 핵에너지를 방출하는 모든 핵무기나 기타 폭발장치”로 정의한다.<sup>140)</sup> 여기에 부분조립 및 미조립된 핵폭발장치의 부품도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관례를 따라서 핵폭발장치와 분리가능한 경우 수송 및 운송수단은 핵폭발장치의 정의에서 제외한다. 즉 “핵탄두”(nuclear warhead)만이 금지대상이며 “운반수단”(delivery vehicle)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았을 경우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기존의 비핵지대조약과 달리, 군사적 목적 뿐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장치도 포함된다고 명기한 것은 평화적 목적의 핵실험을 완전

140) 틀렛롤코조약은 핵무기를 “전쟁목적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단의 특징을 갖고 통제불가능한 정도로 핵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모든 장치”로 정의하였다. 라로통가조약과 펠린다바조약은 핵폭발장치를 “사용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핵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모든 핵무기나 기타 폭발장치”로 정의하였다. 방콕조약은 핵무기를 “통제불가능한 정도로 핵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모든 폭발장치”로 정의하였다.

히 금지한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과 일본이 「핵실험 전면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에 가입한 상황<sup>141)</sup>이므로 양국이 핵실험을 실시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금지되는 핵폭발장치의 성격에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는 것은 아직 CTBT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sup>142)</sup>

## 나. 금지활동

### (1) 핵무기 관련 활동의 금지

핵무기에 관련된 제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비핵지대조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3국비핵지대는 기존 비핵지대조약이 담고 있는 주요 사항을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한과 일본의 핵비보유지를 강력히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3국비핵지대조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3국비핵지대조약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①“개

141) CTBT는 모든 핵무기실험과 기타 모든 핵폭발을 금지한다. 한국은 1996년 9월 24일 가입하였고 1999년 9월 24일 비준하였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날 가입했으며 1997년 7월 8일 비준하였다.

142)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핵국의 핵전력 운용에 사용될 수 있는 “지원시설”(support facilities)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비핵지대화 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해당지역국가에 대한 핵공격이 군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 데, 이를 위해서는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목표”(potential targets)가 비핵지대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는 핵전력의 운용을 지원하는 핵국의 통신, 정찰 및 정보수집 시설과 항공기·함선의 관제시설 등 핵무기운용에 사용될 수 있는 지원시설이 포함된다고 본다. Jozef Goldblat, “Nuclear-weapon-free zones: a history and assessment,” p. 20. 하지만 이러한 지원시설은 재래식전력의 운용에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재래식전력의 정상적인 운용을 막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핵지대조약에 포함될 성격의 규제사항은 아니다.

발”(development), ②“실험”(testing), ③“제조”(manufacture), ④“생산”(production), ⑤“획득”(acquisition), ⑥“접수”(receipt), ⑦“배치”(stationing), ⑧“배비”(deployment) ⑨“저장”(storage), ⑩“비축”(stockpiling), ⑪“설치”(installation), ⑫“장착”(emplacement), ⑬“부착”(emplantation), ⑭“수송”(transportation), ⑮“소유”(possession), ⑯“통제권”(control), ⑰“사용”(use).<sup>143)</sup>

아울러 별도의 조항을 통해 핵폐기물을 해상 및 육상에 무단으로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설치한다. 또한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투기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sup>144)</sup> 한반도주변의 핵국과 원자력발전소보유국들이 3국비핵지대 적용지역내에서 핵폐기물의 해상·육상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부속의정서를 마련하여 서명을 받도록 한다.

펠린다바조약에서 규정한 “연구”(research)의 금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한을 저해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비핵화공동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농축시설 보유금지도 제외하도록 한다. 상용규모의 재처리·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조약당사국인 3국비핵지대조약에 이러한

143) 금지활동에 다음 내용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추구하거나, 비핵지대 역외국가에 대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는 금지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조약당사국의 행동범위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오용이나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활동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상기활동의 “금지”로 핵비보유라는 본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조약당사국이 제3국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도록 보장하는 문제는 검증제도에서 NPT 조약의 제Ⅲ조 2항에 의거하여 핵기술·물질의 수출시 수입국이 IAEA의 제한된 안전조치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144) 「한겨레신문」, 1994년 8월 29일. 북한도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과 해사감 독중국장의 담화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의 핵폐기물 동해투기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 1993년 10월 31일, 12월 3일.

조항을 두는 것은 현실과 조약의 내용이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우에만 채처리·농축시설의 보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이는 조약당사국들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조약의 일부분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NPT 조약도 핵국과 비핵국을 차별하는 부분이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조약이 국제사회에서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3국 비핵지대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최대난점인 평화적 목적의 채처리·농축시설 보유금지 조항을 빗겨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 (2) 핵무기제조 능력과 시설의 폐기

3국비핵지대조약은 핵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남아공을 조약당사국으로 두고 있는 켈린다바조약과 유사하다. 따라서 켈린다바조약과 같이 핵무기개발을 시도했던 조약당사국의 과거핵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핵무기생산에 사용되었던 기술적 하부구조를 철저히 제거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3국 비핵지대조약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항을 두도록 한다.

1. 조약당사국들이 “IAEA의 감시를 벗어나 수행했던 과거 핵활동”에<sup>145)</sup> 대한 모든 자료를 공표한다.
2.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IAEA의 감시하에 폐기한다.
3. IAEA의 감시하에 관련 생산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되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가능한 시설은 전환한다.

---

145) 북한이 IAEA 감시하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을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러한 조건을 첨부하는 것이다.

핵개발에 사용되었던 능력과 시설을 폐기하고 IAEA가 이를 보증하는 것은<sup>146)</sup> 북한의 과거핵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3국비핵지대가 진정한 핵비확산체제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 (3)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금지

남북한과 일본은 모두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유사한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sup>147)</sup>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금지약속은 그 자체가 군사적 차원의 신뢰구축방안임과 동시에 매년 관련 시설의 목록과 위치에 대한 자료를 교환해야 하므로 또다른 신뢰구축방안을 파생시키는 조치이다. 이와 함께, 비핵지대 역외국가가 조약가맹국의 원자력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첨부한다.

## 다. 적용지역

적용지역은 영토개념에 입각하여 남북한과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관할지역으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3국의 영토, 내수, 영해, 다도해역, 해저와 하층토 및 영공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렛콜코

146) 예를 들어 IAEA는 남아프리카공화국정부와 3년에 걸친 협조끝에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했었다는 데클라크(de Klerk) 대통령의 발표를 사실로 확인하고 남아공이 더 이상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보증하였다. Rodney Jones and Mark McDonough, *Tracking Nuclear Proliferation: A Guide in Maps and Charts, 1998*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8), p. 243.

147) 인도와 파키스탄이 1988년 12월 31일 체결한 협정은 1991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 양국은 매년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의 핵시설 목록을 교환한다. *The Arms Control Reporter*, p. 454.A.2.

조약이나 라로통가조약과 같이 외각경계선 개념에 입각하여 적용지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방콕조약에서와 같이 대륙붕과 EEZ를 포함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러·중 등 3개 핵국의 핵전력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지역을 넓게 잡을수록 핵국들의 반대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적용지역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sup>148)</sup> 첫째는 남북한간에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양측이 정전협정 이후 준수해 온 관할지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북한이 서해의 해상경계선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기왕에 국제조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하여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고 한국을 난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일본측에 의해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각종 역사자료와 실효적 지배권을 이유로 한국영토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민족적 입장에서 한국의 견해를 지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즉 독도영유권문제는 일본을 상대로 남

---

148) 특정지역의 영유권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펠리다바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Jozef Goldblat, "Nuclear-weapon-free zones: a history and assessment," p. 26. 미군기지가 있는 "디에고갈시아섬"(Island of Diego Garcia)이 위치한 "차고스군도"(Chagos Archipelago)의 영유권을 영국과 마리티스(Mauritius)가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약의 적용지역을 표시한 지도에는 "양국이 모두 주장하는 영유권문제에 편견이 없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영유권문제가 조약의 틀밖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디에고갈시아섬이 포함된 지역(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이 비핵지대에 포함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도 조약이 디에고갈시아섬에서 미·영 및 다른 조약가맹국들의 행동에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으로 인해 미군의 활동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차고스군도에 군사기지가 존재하고 특정핵국이 이 군도에서의 행동이 조약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한, 러시아는 해당핵국이 비핵지대조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공조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라. 기존의 관련 국제규범 준수

3국비핵지대조약은 조약당사국들이 상호보완차원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기존의 다양한 국제적 규범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sup>149)</sup> 3국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국제규범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Full-scope Safeguards Agreement), ②「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up>150)</sup> ③「원자력사고시 조기통보협약」(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sup>151)</sup> ④「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비상시 지원협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sup>152)</sup> ⑤「원자력안전

149) 이 문제는 가입하지 않은 국제규범이 많은 북한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되므로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즉 비핵지대는 지역안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원자력 관련규범의 가입문제는 별도로 다루자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이광석박사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6일.

150) 핵물질과 시설의 도난, 탈취, 테러 등에 대비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핵물질의 사용, 저장 및 운송시의 방호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 체결되어 1987년 2월 8일 발효되었다. 1999년 4월 1일 현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64개국이 가입하였다.

151) 국경을 넘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원자력관련 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시간, 위치, 방사능누출 및 기타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나 IAEA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6년 9월 26일 IAEA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7일 발효되었다. 1999년 4월 1일 현재 협약당사자는 남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84개국과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등 3개 국제기구이다.

152)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사고와 방사능 비상시 신속한 원조와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협약당사국들이 지원가능한 전문가, 장비 및 물자를

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sup>153)</sup> ⑥「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sup>154)</sup> ⑦「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sup>155)</sup>

이와는 별도로, 3국간에 상기 IAEA 협정과 4개 협약에 대한 의무사항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즉 3국이 기존의 국제규범에 대해 개별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이에 추가하여 이들 규범을 3국간에만 별도로 적용하도록 것이다. 예를 들어, IAEA협정의 경우 3국은 IAEA에 대해 자국에 대한 사찰결과를 다른 두 조약가맹국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개 협약의 경우에도, 협약의 절차에 따른 보고사항을 3국비핵지대 조약가맹국들에게 별도로 통보하도록 한다.

#### 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3국비핵지대조약은 조약당사국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IAEA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6년 9월 26일 IAEA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7년 2월 26일 발효되었다. 1999년 4월 1일 현재 협약당사자는 남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79개국과 FAO, WHO, WMO 등 3개 국제기구이다.

- 153) 원자력이용의 안전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국가차원의 제반조치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94년 6월 17일 IAEA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96년 10월 24일 발효되었다. 1999년 4월 11일 현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65개국이 가입하였다.
- 154) 비핵국으로 이전되는 핵물질과 장비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NPT 제Ⅲ조 2항을 실천하기 위해 1974년 8월 14일 출범한 수출통제체제이다. 1999년 1월 현재 회원국수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36개국이며 한국은 1995년 10월 18일 가입하였다.
- 155)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NPT Ⅲ조만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하는 데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민감한 원자력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1978년 1월 수출통제지침인 「런던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s)을 발표하면서 출범하였다. 1999년 1월 현재 회원국수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35개국이며 한국은 1995년 10월 31일 가입하였다.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조약당사국들이 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약속했음을 명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간의 원자력협력체, 즉 「아시아톰」(Asian Atomic Energy Commission: Asiatom) 설립구상을 3국간에 우선 실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156)</sup>

#### 바. 핵무장 함선·항공기의 통과(항)·기착(항)

북한은 핵무장 및 핵추진 함선과 항공기의 한반도주변 통과(항)과 기착(항)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비핵지대조약은 모두 이를 해당국의 주권사항으로 간주하고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국제적인 관례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즉 공해자유의 원칙과 무해통과·통항의 권리를 존중하여 통과(항) 및 기착(항)의 허용여부를 해당국이 스스로 결정할 주권사항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3국비핵지대조약에 대한 주변 핵국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조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통과(항) 후

156) 일본의 Asiatom 구상과 한국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전성훈,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132~152 참조. 카네코교수는 아시아톰이 창설되면 IAEA를 보완하여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Kumao Kaneko, "Japan needs no umbrella," p. 51. 아시아톰 문제는 상업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비핵지대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광석박사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6일. 이광석박사는 비핵지대는 지역안보증진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은 기착(항)하는 항공기와 함선의 핵무장여부를 해당핵국이 공표하거나 해당지역의 조약가맹국이 해당핵국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기존 비핵지대조약은 이에 대해 가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sup>157)</sup> 3개 핵국의 핵전력이 수시로 활동하는 3국비핵지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을 첨부하는 것은 핵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북한의 경우, 주한·주일미군의 핵전력을 겨냥하여 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핵국들로부터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포괄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보다 중요한 문제에서 핵국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통과(항)·기착(항)이 통상적인 훈련을 위한 “무해한”(innocent) 목적의 행동인지 아니면 비핵지대 역외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적대적”(hostile) 행위인지에 따라 역내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sup>158)</sup> 적대적 행위에 대한 거부권이 허용되는 경우, 3국비핵지대는 역외국가에 대한 모든 무력공격에 이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평화지대」(Peace Zone)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3국비핵지대조약은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범위를 초월하는 광범위한 성격의 새로운 「평화지대조약」(Peace Zone Treaty: PZT)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지대조약은 3국비핵지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포함하는 동북아전체의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낮아졌을 때, 3국비핵지대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157) Jozef Goldblat, “Nuclear-weapon-free zones: a history and assessment,” p. 28.

158) 두가지 개념의 구분은 Tariq Rauf, “Consideration of Mongolia’s nuclear-weapon-free status,” p. 7.

## 사. 기타 주요 사항

### (1) 유효기간

3국비핵지대조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비핵지대조약들과 같이 무기한으로 규정한다. 시한을 정할 경우 해당시한이 끝나는 시점에 조약의 연장여부와 관련하여 커다란 논란이 발생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탈퇴조항

국제조약이므로 탈퇴조항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탈퇴조항의 두 가지 요소는 탈퇴의 요건과 사전통보기간이다. 탈퇴요건은 틀렛콜코조약이나 펠린다바조약과 같이 조약가맹국이 “국가의 최고이익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탈퇴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최고이익을 훼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바람직한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라로통가조약이나 방콕조약과 같이 “조약의 구체적 조항이 위반되었을 때” 탈퇴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전통보기간은 12개월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부속의정서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사례와 동북아의 특성을 감안하여 포괄적 안전보장의정서와 해상·육상 핵폐기물투기금지의정서를 마련하고 관련국들의 동참을 촉구한다. 다른 비핵지대조약에 있는 핵실험금지의정서는 CTBT의 체결로, 비핵지대내 영토보유국의 의무이행의정서는

해당국가가 없는 관계로 3국비핵지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의정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정서의 유효기간과 탈퇴조항은 본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비핵지대조약에 의정서가입국들의 의무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방콕조약에 의정서가입국의 위반행위시 집행위원회가 동남아비핵지대위원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의정서가입국들의 준수여부 확인문제는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정서가입국들의 행위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조건으로서 이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될 뿐아니라, 부속의정서에 대한 서명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가. 포괄적 안전보장의정서

우선 의정서의 전문에서 5개 핵국들은 3국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3국의 핵개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3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 안전보장」(Comprehensive Security Assurance: CSA)을 제공한다고 선언한다.<sup>159)</sup>

159) 필자는 CSA를 비핵화를 선언한 한반도에 적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Seongwhun Cheon, "Regional non-nuclear options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in Young Whan Kihl and Peter Hayes (eds.),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Armonk, New York: M.E. Sharpe, 1997), pp. 409~410 참조.

1. 3국비핵지대조약의 적용지역내에서<sup>160)</sup>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을 하지 않는다.
2. 남북한과 일본이 5개 핵국이외의 새로운 핵국으로부터 핵무기의<sup>161)</sup> 사용과 사용위협을 받을 경우 유엔안보리는 3국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조치를 취한다.

CSA는 적극적 안전보장의 강화와 함께 현재의 소극적 안전보장이 불완전하다는 비핵국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안전보장개념으로서, 3국비핵지대의 조약당사국들에게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국에 대한 CSA의 제공은 현재 남북한과 일본이 우방국들로부터 양자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핵우산”(single nuclear umbrella)을 5개 핵국이 3국에 대해 동시에 제공하는 “다층적 핵우산”(multilayered nuclear umbrella)으로 대체하여 핵우산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 나. 해상·육상 핵폐기물투기금지의정서

한반도 주변의 핵국과 원자력발전소 보유국들이 3국비핵지대 적용지역내에서 핵폐기물의 해상·육상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정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대상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대만을 들 수 있다.

160) 방콕조약과 같이, 비핵지대조약의 당사국에 대해서 뿐 아니라 비핵지대의 적용지역내에서 제3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도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161) 안전보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세균·화학무기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에 대해서도 5개 핵국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은 현재 세균·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3. 이행기구와 조직

기존 비핵지대조약은 해당지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구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3국비핵지대조약은 동북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3국비핵지대위원회」(Agency for the Korea-Japan NWFZ: AKJNZ)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주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3국비핵지대의 목적과 조항의 실천방안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결정한다. 위원회의 본부는 남북한과 일본의 중간지역인 한국의 수도 서울이나 원자력산업의 중심지인 대전에 두는 것이 실무적이나 상징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sup>162)</sup>

위원회는 시기별 정기총회와 현안별 임시총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sup>163)</sup>

1. 3국비핵지대조약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결정한다.
2. 조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방안과 절차를 마련한다.
3. 사무처의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사무처직원의 임용규칙을 마련한다.
4. 사무처에서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검토·논의한다.
5. 다른 정부나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된다.

---

162) 원자력산업계는 핵비확산에 관련된 기구와 자리를 함께 하기를 꺼리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보다는 서울이 무난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신성택박사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13일.

163) 비핵지대조약의 기구와 조직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Tariq Rauf, *Nuclear-Weapon-Free Zones(NWFZs): Questions & Answers,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Charts & Matrices*, pp. 16~19 참조.

6.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각종 연구의 수행을 심의·의뢰한다.
7. 위원회와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8. 총회의 의장은 3국이 순번제로 맡으며,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둘째, 실무기구인 「사무처」(The Secretariat)는 책임자인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을 정점으로 필요한 부서와 직원으로 구성된다. 부서의 직원은 사무총장이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사무처의 주요 임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각종 검증방안이 적절히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또한 주요 현안별 수시보고서와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조약당사국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정보와 자료도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조약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실무협의도 사무처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무처의 직원은 IAEA 직원과 같이 국제기구의 직원으로서 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국가나 조직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임무수행중 습득한 산업 기밀이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4. 검증제도

3국비핵지대조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3국이 IAEA의 전면안전조치를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3국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핵물질과 기술을 핵개발에 전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비핵지대 역외국가의 핵개발을 장려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NPT 제Ⅲ조 2항

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약당사국들이 핵기술·물질을 수출할 때 역외 비핵국이 해당기술과 물질에 대한 IAEA의 제한된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둘째, 지역차원의 사찰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한다. 지역사찰체제는 IAEA의 사찰제도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비핵지대를 창설하는 3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현되어야 할 조건이다. 일본의 국내사찰제도는 기존의 IAEA 사찰보다 훨씬 강력하므로 일본의 기술적, 경험적 노하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자간 사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지역의 사례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자간사찰기구인 「ABACC」(Brazilian-Argentine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을 구성하였고 여기에 IAEA를 포함시킨 다자간 사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164)</sup>

다만 지역사찰체제의 수립은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안은 아니므로 3국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다국적 사찰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하는 것만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보다 순차적으로 달성해 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sup>165)</sup> 따라서 IAEA의 전면안전조치에 바탕을 두고 비핵지대조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원자력의

164)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실시중인 다자간 사찰제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전성훈,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pp. 42~61 참조.

165) 지역사찰체제를 설립할 때 다음 사항들이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①사찰의 90%이상이 일본에 집중되는 불균형문제, ②소용비용의 조달, ③일본의 핵주기시설에 대한 남북한 사찰요원의 사찰가능성. IAEA 사찰의 경우, 일본정부는 민감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여 한국출신 IAEA 사찰관이 핵주기시설의 사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이광석박사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6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문제를 논의하면서 이와 함께 지역사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으로 판단된다. 지역사찰체제 출범이 전이라도 자료교환과 같은 실천가능한 기초적인 검증방안은 3국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국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교환하는 방안과 IAEA에 대해 자국에 관한 사찰결과를 다른 두 국가에 통보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사찰이 필요한 경우 기존 비핵지대조약에서와 같이 IAEA가 실시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역사찰체제를 수립할 때, ABACC의 경우와 같이 IAEA를 포함시켜야 하는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기존의 4개 비핵지대조약의 검증기구는 검증과정에서 주로 정치적 차원의 사항들을 담당하면서 기술적 차원의 문제들은 IAEA에 위임하고 있다. 즉 양자간 전면 안전조치협정이나 IAEA에 대한 특별사찰 요청을 통하여 IAEA가 사찰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IAEA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서 IAEA는 비핵지대조약의 사찰업무를 감당할 만큼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66)</sup>

## 5. 특별사찰

특별사찰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에 실시된다. 첫째, IAEA가

---

166) Tariq Rauf, *Nuclear-Weapon-Free Zones(NWFZs): Questions & Answers,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Charts & Matrices*, p. 15 참조. 비핵지대조약이 IAEA에 대해 특별사찰 실시요청을 명문화한 것만으로 IAEA의 사찰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AEA는 이사회의 결의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핵지대조약의 주체와 IAEA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IAEA에 특별사찰을 요청하도록 한 기존의 3개 비핵지대조약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이광석박사와의 의견교환, 1999년 12월 6일.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즉 IAEA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의거한 임시·정기사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조약당사국의 조치를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IAEA는 이사회에서 해당국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의하고 이를 집행한다.<sup>167)</sup>

둘째, 3국비핵지대의 조약당사국이 다른 조약당사국의 조약위반사실을 3국비핵지대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 위원회가 IAEA로 하여금 해당국에 대해 특별사찰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sup>168)</sup> 이 경우 특별사찰의 실시주체는 IAEA이지만 결의주체는 3국비핵지대위원회이다. 또한 조약위반의혹을 받은 조약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위원회에 특별사찰을 실시해주도록 요청할 경우에도, 위원회는 IAEA에 특별사찰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심을 받는 국가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특별사찰의 결의주체가 된다.

## 6. 조약위반제소시 해결절차

한 조약당사국이 다른 조약당사국의 조약위반사실을 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sup>169)</sup>

---

167) 예를 들어, IAEA는 1993년 2월 25일 북한에 대해 3월 25일까지 특별사찰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2636호)을 채택한 바 있다.

168) 지금까지 4개 비핵지대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별사찰의 실시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핵지대 조약당사국들의 핵개발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riq Rauf, *Nuclear-Weapon-Free Zones(NWFZs): Questions & Answers,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Charts & Matrices*, p. 15.

169) 회원국의 수가 많은 일반적인 비핵지대조약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Ibid., pp. 22~24 참조.

1. 3국비핵지대위원회는 위반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해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제출된 자료가 의혹을 해소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IAEA에 특별사찰의 실시를 요청한다. 위원회의 대표가 특별사찰에 동행할 수 있다.
3. IAEA는 사찰결과를 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한다.
4. IAEA의 사찰결과, 해당국가의 조약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경미한 조약위반의 경우, 해당국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b) 위반국이 이러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약위반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 위원회는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여 해당국에 대해 안보리차원의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 7. 3국비핵지대 설립절차

가장 현실적인 3국비핵지대 설립방안은 기존 비핵지대조약들의 전반적인 창설과정을<sup>170)</sup>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협상에서부터 발효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Track II 차원의 논의를 통한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
2. 3국간 정부차원의 협의 시작
3. 3국정부가 3국비핵지대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선언 채택

---

170) Ibid., p. 27.

4. NPT 회원국들과의 협의 개시
5. 핵국들과의 협의 개시
6. NPT 평가회의나 준비회의에서 3국비핵지대에 대한 논의 개시
7.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3국비핵지대결의안(초안)에 대한 검토 및 작성
8.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3국비핵지대결의안(초안) 채택
9. 유엔총회에서 3국비핵지대결의안 채택
10. 조약당사국들간에 3국비핵지대조약 문안 협상 개시
11.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3국비핵지대조약(초안) 제출
12. 유엔총회가 3국비핵지대조약(초안)에 대한 환영입장 표명
13. 조약당사국들이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3국비핵지대조약에 서명
14. 각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 진행
15. 발효 및 이행

## 8. 북한참여 유도방안

3국비핵지대창설의 최대과제의 하나는 국제규범의 테두리 밖에서 돌출적인 행동을 일삼는 북한을 끌어들이는 문제이다. 특히 핵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미군핵전력을 겨냥하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비핵입장을 일관되게 펴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을 3국비핵지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고 북한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sup>171)</sup>

---

171) 북한참여 유도방안은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목표로 하는 동기제공이라는 차원에서

### 가. 국제조약을 통한 국가인정

3국비핵지대조약은 국제조약으로서 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개선을 앞당기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북일수교 이전에 조약이 체결될 경우 이는 수교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3국비핵지대조약은 각국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해야 하는 국제조약이므로 비준동의에 앞서 국가승인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남북한간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한국이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큰 이유는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민감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헌법에는 한반도 전역을 관할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이다. 하지만 고착된 남북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쌍방을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서독도 1972년 서로를 주권국가로 수용하고 동서독의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개선의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남북한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관념과 고착된 입장에서 탈피해야 하는 고통스런 일일 수 있으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긍정적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3국비핵지대조약에 핵국이 서명하는 부속의정서가 포함될 경우, 북한이 조약당사국인 국제조약의 부속의정서에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미·영·불이 서명하는 것 역시 북한과 이들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수교가 이미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미·영·불이 3국비핵지대의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들이 북한을 핵비확산이라는 지고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양자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혹 해소

3국비핵지대조약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핵무장의혹을 해소하는 적절한 장치가 될 수 있다.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용기술과 핵무기제조기술에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원자력의 “양면성”(dual use property)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에 대해서 경계의 입장을 늦추지 않았다. 북한은 기회있을 때마다 양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다.<sup>172)</sup>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이 양국의 원자력활동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북한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3국비핵지대조약이 적절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과 일본의 원자력활동에 대한 관련자료를 입수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이 3국비핵지대창설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

172) 예를 들어,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성명,” 「조선중앙방송」, 1992년 12월 10일.

#### 다. 주한·주일미군의 핵보유의혹 해소

3국비핵지대는 북한에게 한반도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군전력의 핵 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3국이 비핵지대조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통해 한반도주변에서 핵국들의 핵전력운용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장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핵전력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구축조치이다. 둘째, 남북한 상호 핵사찰시 거론되었듯이, 조약당사국의 군사시설을 사찰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다면 북한이 주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직접 사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물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군사기지를 남한과 일본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라. 비핵지대주장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

북한이 비핵지대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한국의 독자적 의사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서, 한미간의 정치·전략적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3국비핵지대 수립논의와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한미합동군사훈련 관련 문제

한미양국은 우선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 체결 이후 중단되고 있

는 틱스피리트훈련을 영구히 중단하고 이로 인한 전력손실은 지금과 같이 다른 연합훈련을 통해 만회하도록 한다. 아울러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내 핵부재선언」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남한의 모든 주요 군사훈련에 북한의 참관단을 초청하여 훈련병력의 핵보유여부를 검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핵무기사용을 가상한 훈련이 아님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2) 대북핵위협해소 관련 문제

핵위협금지 및 핵불사용 문서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문(제3조 1항)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위협·불사용을 공식 보장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약속이 미국이 기존에 제공해 온 조건부 안전보장인지 아니면 보다 강화된 무조건 핵불사용약속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핵국의 동맹국이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을 침략할 경우, 침략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허용하는 조건부 핵불사용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무조건 핵불사용정책을 거론하며 미국으로부터 같은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sup>173)</sup> 이 문제는 3국비핵지대조약의 부속의정서에서 5개 핵국들이 남북한과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핵불사용을 약속하도록, 즉 핵국들이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부속의정서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주한미군핵철회수는 1991년 노대통령의 핵부재선언으로 완성되었으며 이 선언의 실천여부는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밝힌다. 주한미군의 철회수는 한미안보협력의 틀내에서 논의할

173) 중국은 5개 핵국중 유일하게 비핵국에 대해 무조건 핵불사용을 보장하였다. 북한은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1994.8.13), NPT 연장회의 제3차 준비회의에서의 북한대표 연설(1994.9.20), 최수현 외교부부부장의 제49차 유엔총회 연설(1994.10.7) 등을 통해 핵국들이 비핵국들에 대해 무조건 핵불사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사안이며 북한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다.

### (3) 핵우산제공 관련 문제

북한의 핵우산보장조약 및 핵무기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 체결금지 주장은 한미안보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요구이므로 수용불가입장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밝힌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안보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일본도 북한이 핵우산제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남침이 없는 한 미국의 대북핵위협은 제네바기본합의문을 통해 해소되었고 미국의 대남 핵우산은 다른 핵국이나 새로운 핵개발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비한 것이므로 북한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대응논리를 제시한다.

한편, 이 문제도 5개 핵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인 안전보장부속의정서가 체결될 경우 보다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3국 비핵지대에 대한 포괄적 안전보장의정서는 현재 남북한과 일본이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핵우산을 5개 핵국이 3국에 대해 동등하게 동시에 제공하는 다층적 핵우산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NCND정책 관련 문제

핵무장·핵추진 함선과 항공기의 영토진입·출입·통과·방문 금지문제는 북한에 대해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조약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관례를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즉 공해자유의 원칙과 무행통과(항)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고 통과(항)·기착(항)의 허용여부는 각국의 주권사항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한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은 3국비핵지대조약을 통해서 뿐아니라

이와 별도로 남북한 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조치를 합의·이행하면서 제도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상호사찰규정이 합의될 경우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며,<sup>174)</sup> 이를 위한 준비와 훈련을 1992년부터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이 타결되기 전까지 한미연합으로 실시한 바 있다.<sup>175)</sup>

한편 북한이 미국에 대해 주한·주일미군의 핵보유여부를 수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NCND 정책에 위배되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한과 일본이 적절한 군사기지의 사찰을 포함한 상호사찰방안에 합의하고 주한·주일미군이 사찰을 허용할 경우 북한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

174) 예를 들어, 핵통제공동위원회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92년 당시 솔로몬(Richard Solomon)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발언. 「한국일보」, 1992년 6월 9일 참조.

175) 한국국방연구원 신성택박사와의 의견교환, 1999년 11월 19일.

## VII. 결 론

한반도와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는 지금까지 비핵지대가 실현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첫째, 역내 관련국들간의 양자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상당한 수준의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300만여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되어 가지만 아직도 남북한은 냉전의 유일한 잔재로 대결상태로 남아있다. 21세기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과 유일 초강대국임을 자부하는 미국이 미묘한 경쟁관계에 있고, 과거 전쟁을 경험했던 중국과 일본간의 불신과 경쟁의 식도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과 일본, 미국과는 아직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남북한과 주변 4강사이의 외교적 관계정상화도 완성되어 있지 않다.

둘째, 지금까지의 비핵지대조약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핵국들이 해당지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중남미, 남태평양, 아프리카는 핵국들이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물론 역내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이나 핵실험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서명을 지연하였다. 동남아비핵지대조약의 경우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함에 따라 협상의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와 달리 동북아에는 주한미군 3만 7천 명을 포함하여 10만여명의 미군이 존재하며, 중국, 러시아, 미국 등 3개 핵국이 핵전력으로 대치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

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경우 다른 비핵지대와 달리 핵문제가 훨씬 첨예한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비핵화공동선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남북한과 일본이 「3국비핵지대」(Korea-Japan Nuclear-Weapon Free Zone: KJNWFZ)를 창설할 것을 제의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핵협상과정과 기존 비핵지대조약의 내용 그리고 5개 핵국과 남북한 및 일본의 비핵지대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3국비핵지대창설이 갖는 다양한 효과와 현실적 타당성을 제시한 바탕위에서,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3국비핵지대 창설문제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어왔지만,<sup>176)</sup>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구체적인 창설방안까지 제시하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두드러진 특징은 3국비핵지대가 동북아의 안보에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현안들이 압축되어있는 지역안보문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점이다. 이는 3국비핵지대창설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고 3국뿐 아니라 주변강국들의 민감한 안보정책이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하지만 이러

176) 예를 들어, 일본의 안보문제전문가인 오가와(Shinichi Ogawa)는 1997년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남북한과 일본을 포함하는 3국비핵지대가 동북아시아의 핵비확산상태를 공고히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군축을 촉진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Shinichi Ogawa, "Link Japanese and Koreans in a Nuclear Weapon-Free Zon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9, 1997, p. 8.

한 특징이 3국비핵지대창설을 실현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거나 창설노력을 포기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동북아의 안보 현안이 응축되어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역내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동기부여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3국비핵지대창설이라는 학문적이고 현실적인 주제에 대한 최종완성품이라기 보다는 문제제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깊이있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기초작업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했던 현실적 한계가 큰 원인이다. 3국비핵지대창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더욱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여러가지 과제를 발견한 것도 본 연구의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3국비핵지대가 미국의 아태안보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제로 다루어 충분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국비핵지대창설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역외국가는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3국비핵지대에 북한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것 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지만 북한의 참여는 확신할 수 없다. 설혹 북한이 협상에 참여하더라도 협상테이블을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3국비핵지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에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에 대한 Track II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현재 진행중인 4자회담에서 정부차원의 공식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국비핵지대의 창설이 지역안보증진을 목표로 한 긴 여정의 종착역은 아니다. 3국비핵지대조약이 체결되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대상국과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 되어야 한다. 이미 일국비핵지대를 선언한 몽고를 참여시키고, 그 다음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단계를 밟아 엔디콧이 구상하는 동북아제한비핵지대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방콕조약이 관할하는 동남아시아, 라오통가조약이 관장하는 남태평양지역 그리고 틀랏틀코조약의 중남미지역을 연결하는 「환태평양비핵지대」(Pan-Pacific Nuclear-Weapon-Free Zone: PPNWFZ)도 구상할 수 있다. 남북한과 일본이 참가하는 3국비핵지대는 바로 PPNWFZ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와 함께, 3국비핵지대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낮아졌을 때, 3국비핵지대는 역외국가에 대한 모든 무력공격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3국평화지대」(Korea-Japan Peace Zone: KJPZ)로 발전적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다. 환태평양비핵지대를 「환태평양평화지대」(Pan-Pacific Peace Zone: PPPZ)로 전환하는 것은 그 다음 수순으로서 지역안보의 중추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박희권. 「한반도의 비핵화」. 서울: 경세원, 1992.
-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서울: 일신사, 1988.
-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이호재. 「핵의 세계와 한국핵정책: 국제정치에 있어서 핵의 역할」. 서울: 법문사, 1987.
- 전성훈.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최상진. 「비핵지대의 확산과 '동북아 제한비핵지대' 설치안」. 서울: 세종연구소, 1997.
-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나남, 1991.
- Jones, Rodney and Mark McDonough, *Tracking Nuclear Proliferation: A Guide in Maps and Charts*, 1998.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8.
- Spector, Leonard. *Nuclear Ambitions*. Boulder: Westview Press, 1990.

## 2. 논 문

- 고한석. “세계 비핵지대조약의 현황과 전망.” 「원자력산업」. 1998년 2월호.
- 신성택, “Nuclear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국제화시대 과학기술의 국제역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1999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주최 국제학술회의, 1999년 11월 19일.
- 이철기.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韓國國際政治論叢」. 37집 2호. 1997.
- 이호재. “한반도 핵논쟁과 비핵지대안.” 이호재 편. 「韓半島軍縮論」. 서울: 법문사, 1989.
- 전성훈. “核問題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非核化 展望.” 「제5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전 응. “동북아비핵지대안의 가능성과 실천방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0차월례세미나 발표논문. 1994년 11월 29일.
- 佐々木芳隆. “核戰略の中の日本.” 坂本義和編. 「核と人間: 核と對決する20世紀」. 東京: 岩波書店, 1999.
- Barnaby, Frank et al. “The Implementation of Agreements Related to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76*. Stockholm: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76.
- Bertsch, Gary and Richard Cupitt. “Nonproliferation in the 1990s: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 in Brad Roberts, ed., *Weapons Proliferation in the 1990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5.
- Cheon, Seongwhun. “The Inter-Korean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its Past, Present and Future.”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and lecture on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Japan* sponsored by the Asahi Shimbun, the city of Hiroshima, and the Hiroshima Peace Culture Foundation, held at the Hiroshim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July 29, 1997.

———. “Regional Non-Nuclear Options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in Young Whan Kihl and Peter Hayes, eds.,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Armonk, New York: M.E. Sharpe, 1997.

———. “A South Korean View of US 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 paper prepared for The Woodrow Wilson Center’s International Project on *US Counterproliferation Doctrine*, held in Washington, D.C., October 24, 1994.

Endicott, John. “Existing Criteria for Nuclear Weapons-Free Zones and the Limited Nuclear Weapons-Free Zone Concept for Northeast Asia.” *A Report by the Chairman of the Interim Secretariat Regarding Efforts to Create a Cooperative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at Hakone Japan in October 1999.

———. “The Impact of a Limited Nuclear Free Zone on Deployed Nuclear Weapons in Northeast Asia.” prepared for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managed by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July 1994.

Enkhsaikhan, Jargalsaikhany. "Mongolia's Single-State Nuclear-Weapon-Free Zone." *Disarmament Times*, December 1998.

Fischer, David and Harald Müller. "The Fourth Review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PRI Yearbook 1991*. Stockhol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91.

Goldblat, Jozef. "Nuclear-Weapon-Free Zones: a History and Assessment." *The Nonproliferation Review*, Spring-Summer, 1997.

———. "Nuclear-Weapon-Free Zones: Lessons from the Existing Agreements." in Darryl Howlett and John Simpson, eds., *East Asi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Southampton: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1993.

Harrison, Selig. "Korea at the Crossroads: Absorption, Confederation or Chaos?"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원주최 국제학술토론회, 1993년 4월 9~10일.

Kaneko, Kumao. "Japan Needs No Umbrella."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rch/April 1996.

Kwak, Tae-Hwan and Seung-Ho Jo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s and Prospects." *Arms Control*, Vol.14, No.2, August 1993.

Mack, Andrew. "North Korea and the Bomb." *Foreign Policy*,

Summer 1991.

Ogawa, Shinichi. "The Nuclear Security of Japan and South Korea: a Japanese View."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Summer 1997.

Ogunbanwo, Sola. "The Treaty of Pelindaba: Africa is Nuclear-Weapon-Free." *Security Dialogue*, Vol.27, No.2, 1996.

Rauf, Tariq. "Consideration of Mongolia's Nuclear-Weapon-Free Status." paper presented at the Regional Disarmament Meeting in Asia and the Pacific in Mongolia on *Security Concepts in a Changing World*, sponsored by the UN Regional Centre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 held on August 3~5, 1999.

———. *Nuclear-Weapon-Free Zones(NWFZs): Questions & Answers, Negative Security Assurances, Charts & Matrices*. Monterey: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1997.

Sagan, Scott D. "The Causes of Nuclear Proliferation." *Current History*, April 1997.

U.S. Department of Energy. "Policy Forum: Energy Futures."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1996.

### 3. 기 타

#### <신문, 잡지 및 방송>

「동아일보」.

「로동신문」.

「月刊朝鮮」.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The Associated Press.*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Shinichi Ogawa. "Link Japanese and Koreans in a Nuclear  
Weapon-Free Zon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ugust,  
29, 1997.

#### <기타 문건>

「남북대화: 제56호」. 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2.

「남북대화: 제55호」. 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2.

「남북대화: 제53호」. 서울: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1991.

「남북한 통일·대화제의 비교 (I)」. 서울: 국토통일원, 1990.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核武器非擴散條約 第4次 評價會議 參加結果 報告書」. 서울: 외무부, 1990.

「조선중앙연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9.

「조선중앙연감 198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조선중앙연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핵비확산 핸드북」.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1997.

「IAEA 핸드북」.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1995.

*The Arms Control Reporter*.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Defense and Disarmament Studies, 1999.

*Background Data: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2nd Meeting of the Expanded Senior Seminar, October 10~14, 1996, Bordeaux, France.

*The Bordeaux Protocol of the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 at the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March 1997.

Decision entitled "Extension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1995/32/DEC.3*.

Decision entitled "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1995/32/DEC.2*.

Decision entitled "Strengthening the Review Process for the Treaty." *NPT/CONF.1995/32/DEC.1*.

*The DPRK Report No. 20*,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and the Center for Contemporary International Problems, September-

- October 1999. (<http://www.nautilus.org> NPASNet).
- Establishment of nuclear-weapon-free zones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freely arrived at among the States of the region concerned, *Chairman's Paper/Rev.4*, April 24, 1999.
- Excerpt from the House-Senate Conference Report for HR 4328 (Omnibus Appropriations Bill)*, October 28, 1998.
- Final Declaration of the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30/Rev. I, Annex I*, May 30, 1975.
- IAEA Resolution GOV/2636*, February 25, 1993.
- Informal Working Paper Reviewing Article VII of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Question of the Security of Non-Nuclear-Weapon States*, prepared during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August-September 1980, paragraph 1 and 2.
-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999.
- NPT Review Conference Document NPT/CONF/C.I/L.1.*
- Outline of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by Kumao Kaneko, October 1999.
- Resolution on the Middle East, *NPT/CONF.1995/32/RES/1.*
- 1995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Final Document*, 1995.
- Special message of the US President to Congress*, 28 March 1961.

*Statement by Ambassador Chang-beum Cho,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t the 1999 Substantive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April 13, 1999.*

*The Third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85, Final Declaration, Review Document NPT/CONF.III/64/I, Annex I, 1985.*

*UN Document A/6834.*

*UN Document A/10027/Add.1.*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이헌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균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대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준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 연례정세보고서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b>■ 통일문화시리즈</b>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b>■ 논총</b>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b>■ Translation Series</b>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①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증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교류협력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4 팩시밀리 901-2543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ISBN 89-87509-78-8 93390

가격 6,000원